

제417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8월27일(화)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7)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9)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9)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2)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4)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1)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7)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6)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8)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6)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8)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0)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1)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5)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5)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6)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1)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0)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2201805)
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0)
 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1)
 22. 농어업회의소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0)
 23. 농어업회의소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4)
 24. 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5)
 2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7)
 2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4)
 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5)
 2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0)
 2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8)
 3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5)
 3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6)
 3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1)
 3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2)
 3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4)
 3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1)
 3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1)
 3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5)
 3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9)
 3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1)
 4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4)
 4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2)
 4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1)
 4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2)
 4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4)
 45.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3)
 4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5)
 47.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4)
 48.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9)
 49.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8)
 50.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0)

-
51.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1)
 5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2)
-

상정된 안건

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7)	6
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9)	6
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9)	6
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2)	6
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4)	6
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1)	6
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7)	6
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6)	6
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8)	6
2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7) ..	33
2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4) ..	34
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5) ..	34
2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0)	40
2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8)	40
3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5)	40
3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6)	54
3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1)	54
3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2)	54
3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4)	54
3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1)	54
3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1)	72
3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5)	72
3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9)	72
3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1)	72
4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4)	72
4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2)	72
4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1)	72
4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2)	72
4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4)	72

(10시12분 개의)

○소위원장 이원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법률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소위원장으로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사를 하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의 향후 운영 일정과 의사일정 작성 기준 등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법 제49조의2와 제57조에 따라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정례화하겠습니다. 다만 양당 간사의 협의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심사 안건 선정 기준은 소위원회 회부 일자별로 심사를 진행하되 양당 간사협의를 거쳐 안건 추가 및 변경·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 절차를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혹시 안건 상정하기 전에……

이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법안 심사와 관련해 가지고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여기 자리에 와서 처음 보게 되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아시다시피 법안의 내용이라든지 안건 하나하나가 현장에서 일반 국민들이나 당사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한데.

제가 27일 날 법안소위가 있다는 것은 이미 다 공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공지가 돼 있는데 심의되는 안건도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 27일에는 어떤 어떤 안건 다룬다는 게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상임위라든지 정부 측의 검토보고서가 최소한 며칠 전에는 나와 줘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라든지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오늘은 왜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앞으로 이제 소위원회의 안건들,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공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양당 간사 간의 의견 차이를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지연됐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실에서 접수된 순서대로 정부랑 준비를 하는 걸로 통상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 양당 간사 간에 몇 개 법안을 어떻게 심사할 건지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준비하는데 좀 늦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음부터 좀 더 제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저는 농식품부에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건데요. 내실 있는 법안 심의를

하려면…… 의원님들이 각자 입법안을 발의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발의될 때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의견 조율도 사전에 진행되고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 조율하거나 사전에 정리할 때 훨씬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데 실제 그 렇지를 못해요. 아마 행정실하고 협의해서 안건이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서야 정부에서 안건과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래서 의원들 입법안 발의가 되거나, 정부 입법안도 마찬가지겠지만 최소한도 농해수위 입장에서 그런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좀 검토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발의 의원에게 입장이라든가, 조율할 수 있으면 사전에 조율해 오면 훨씬 더 내실 있는 심사가 적기에 잘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점을 유념해서 의원들 입법안 발의가 될 때 같은 의사소통 과정이 내실 있게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관께서 챙겨서 그 부분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희용 간사님.

○**정희용 위원** 정희용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농림부에서 자료를 먼저 말씀드려 가지고 내실 있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본회의에서 다 논의를 못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상임위로 다 나눠 놓은 거고. 그러면 소위원회도 사실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다루기가 힘드니까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의 위임을 했는데, 소위원회 구성이 사실 처음에 좀 일방적으로 진행됐고…… 그런데 또 사실 소위원회인데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들 하시고 싶은 말씀들은 있으시겠지만 소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선 위원님의 발언과 유사한 취지의 발언은 가급적 생략을 해 주시고, 그렇지만 순번을 먼저 우선시하면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실 수 있으니까…… 유사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 소위 진행이 굉장히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건과 관련해서 이만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앞선 21대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고 논의가 제대로 안 된 안건이 다시 지금 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재의요구권 하고 21대 말에 또 안건이 올라왔었고 그걸 지금 세 번째로 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 굉장히 공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양쪽에서 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22대 국회가 생기고 나서 민생에, 우리 농업 현안이 어려운데, 농민들이 어려운데…… 각자의 주장은 주장을 하더라도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소위 위원님들의 집단지성을 모아서 빨리할 수 있는 것, 통과시킬 것은 빨리 통과시키고 또 이견이 있는 것은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를 희망하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양당 간사 간에, 향후 소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어느 정도 법안 심사를 할 건지는 양당 간사 간에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위원회부터는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고 또 우리 행정실과 부처에서도 충분히

협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께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부에서도 사전에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 특히 농해수위 소관에 계신 의원님들이 계시면 사전 입장 정리되는 대로 설명도 드리고 또 취지도 듣고 이런 노력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참고로 의사일정안을 보면 1번에서부터 52번까지 상정돼 있습니다. 52번이 임호선 의원님 대표발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은 이렇게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안 상정하기 전에. 순서대로 법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나 제가 어느 시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그 법안은 오늘 회의가 끝나기 직전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심사하는 걸로 해서 뒤로 미루고 차순위 것 심사에 들어가고 또 차순위가 쟁점이 되면 뒤로 미루고 또 차차순위로 이렇게 순서대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쟁점으로 놓여 있는 법안들은 마지막에 의견을 교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이 안 계시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7)
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9)
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9)
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2)
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4)
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1)
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7)
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6)
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8)

(10시21분)

○소위원장 이원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박범수 차관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차관 박범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법안들을 많이 농업·농촌 발전,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서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위원님들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드려 가지고 좋은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바로 법률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배포해 드린 심사자료 1권입니다. 가로 자료입니다, B4.

1페이지입니다.

21대 국회에 두 차례 상임위 의결이 된 바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2대 국회에 총 11건이 회부가 됐는데 오늘은 9번까지 논의를 하실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9건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1번 윤준병 의원안은 21대 의결 대안과 동일하고 3번 황명선 의원님, 서삼석 의원님부터 정희용 의원님까지는 신규 발의한 내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개정안별 주요 내용을 18쪽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6번, 공공비축 물량 확대 등의 경우 신정훈 의원님이 새롭게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목적 규정에 적정한 가격 유지 등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면 윤준병 의원님부터 임미애 의원님까지 목적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윤준병·신정훈·임미애 의원안을 토대로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그 내용은 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밀·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검토의견입니다.

1안은 밀, 콩을 법률에 추가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 문구를 삭제하고 있는데 저희 검토의견은 오탏가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에는 밀, 콩을 법률로 상향하였지만 추가로 곡류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 문구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페이지는 참고자료고요.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양곡수급계획 포함 사항입니다.

맨 우측에 검토의견입니다.

양곡수급계획 대상에 정부관리양곡을 양곡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마다 조문명을 변경하거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2항에서는 양곡수급계획 포함 사항 변경과 관련해서 공공비축양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에 수입양곡을 추가하거나 일반양곡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 밑에 2번, 자급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각 의원님들마다 그 내용이 상이한 상황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4항에 국회 제출·보고 의무 규정이 있는데 양곡수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는데 이 제정안 수용 시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4번, 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 점검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농림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보관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우측에 제9조의3으로 종합 양곡관리시스템 구축·운용 근거 마련하는 내용인데 타당해 보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 점검이나 정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용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인데요. 200만 원 과태료 부과하는데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항목으로 공공비축양곡 물량 확대 및 비축 비용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국제기준보다 확대하는 내용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 이관 부분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의무수입양곡의 실태조사 내용인데 주요 내용은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수립 등의 내용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수입양곡의 방출 제한으로 의무수입양곡 중 밥쌀용이나 가공용 양곡은 방출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신정훈 의원안에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의무수입양곡제도 내용이 있고요.

21페이지의 7번, 미곡의 매입·판매 대책 수립·시행입니다.

이원택 의원안은 16조 3항을 개정해서 적정가격 실현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미곡의 매입·판매 대책 수립·시행 의무화, 제4항입니다. 미곡 가격이 하락하거나 가격 상승할 경우에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명암 친 부분인데요. 시장격리 미곡의 매입가격을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인용 법률 제명을 현행화하는 내용인데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주제로 양곡가격보장제도 도입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양곡의 시장가격이 적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에 생산자에게 차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이 약 1조 50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기준가격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30페이지에 해외 사례가 있고요.

31페이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내용이 여러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성격과 관련해서 심의 기구로 하자는 의견과 심의·의결 기구로 하자는 의원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 논의 사항에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미곡수급안정대책 수립, 가격 관련 사항, 미곡의 재배면적 조정 사항 등이 들어가 있고요.

32페이지 보면 위원회 심의 사항이 아니고 각 개별 조문에 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기준가격 산정이나 6번의 양곡 가격 수립,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곡수급계획의 운용에 관한 사항, 8번으로 용도별 판매가격과 판매시기, 10조의 공공비축 양곡 매입·물량, 그다음에 34쪽에 미곡 가격 폭락 등의 기준 등이 있고 35페이지에 보시면 양곡가격보장제 대상 품목이나 기준가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차액의 지급비율이나 (논)타작물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제정안에 수용될 경우에 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7페이지의 위원회 구성인데요.

3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생산자단체가 15명 중 5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직역의 과다 대표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9페이지입니다.

미곡의 수급안정 관련 내용입니다.

(논)타작물 재배면적 관리 및 지원 계획 수립 내용인데 대상에 논타작물이나 타작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 검토의견은 논에서 재배하는 타작물인 논타작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논)타작물 재배지원 시책 추진과 재정 지원 사항인데 재정 지원의 의무 또는 재량과 관련해서 관련 사업 범위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1쪽의 벼 재배 농업인 등에 대한 의무 부여인데 앞선 내용과 동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2쪽의 미곡관리시스템 구축·운용 사항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정회용 의원안에서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그 외 의원님은 제2항 통계나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로 돼 있기 때문에 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 이 부분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 추진 근거 마련입니다.

이 내용은 미곡 예상생산량 추정을 기반으로 선제적 사업을 지원하거나 양곡수급안정 대책에 선제적 수급조절 계획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46페이지의 양곡 생산자단체 설립 근거 내용인데 양곡 생산자의 공동이익 도모 목적이지만 관련 입법례를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입법례는 47페이지에 있습니다.

48페이지, 양곡유통업의 육성 근거 마련입니다.

정희용 의원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있고 다른 의원님들은 약칭을 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인데, 첫 번째 수요개발과 소비촉진은 타당하다고 봤지만 국산 양곡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하는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시행일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하고 있는데 제정안 수용 시 이 부분을 1년 정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수석위원 설명은 일괄 설명을 하는 걸로 아까 저랑 협의를 해서 법안 전체 일괄 설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먼저 7페이지, 1조(목적)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의원님들께서 죽 빨의해 주신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만들어 봤는데요. 7페이지 밑에 목적, 농식품부 의견의 박스에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수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목적)을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가격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개선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정도로 수정을 하면 의원님들 내신 문구들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또 법 취지에도 맞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2조 계속할까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일괄로 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8페이지의 밀·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은 저희들도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것도 문구를 조금 수정을 해 보면, 수정동의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문구는 ‘미곡·밀·콩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밀·콩은 지금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면 법으로 올리게 되는 것이고 혹시 추가로 더 필요한 품목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더 추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구를 이렇게 조정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의 양곡수급계획 포함해서 수립 관련 절차 변경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수정해서 반영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3조 1항에 보면 현행에 ‘정부관리양곡’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전체 양곡으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정부 양곡이 아닌 민간 양곡, 민간이 갖고 있는 양곡을 저희들이 법으로 통제해 가지고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행대로 그냥 저희들이 정부관리 양곡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1호도 그렇고 2호도 그렇고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윤준병 의원님의 3호에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이런 게 몇 분 의원님들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정부가 지금도 수입양곡을 나름대로 안에서 용도별로도 운용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법에 명시가 되면 WTO나 다른 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문제를 삼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더 힘들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법에 넣지 마시고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4호의 양곡수급계획의 적정한 자급목표나 양곡 이런 사항이 지금 몇 분 의원님들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박수현 의원님 안은 ‘생산자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자급목표나 이런 사항은 이미 농업·농촌 기본법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양곡수급계획은 수급하고 관련된 사항이니까 여기에는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기본법에 조문이 돼 있는 게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뒤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하고 같이 포함이 됩니다마는 3항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돼 있는데, 아마 다른 조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결’은 조금 빼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양곡수급 관련된 것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님이 정하게 돼 있는데 수급관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만약에 국무회의에서 반대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또 열어서 수급관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또다시 올려야 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심의 조항으로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필요한 내용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항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원안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의 양곡 보관 실태 점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용 근거 마련은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만 지금 세 분 의원님들 내주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 근거를 4항에 넣어 주셨는데 이 조항은 현행법 26조에 이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중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 반영을 안 하셔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의 9조의 3 1항, 2항은 저희들도 수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15페이지의 과태료 조항도 큰 문제가 없이 저희들 수용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17페이지의 공공비축양곡 물량 확대하고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비축·운용 비용을 내도록 돼 있는 조항입니다.

신정훈 의원님 안의 ‘공공비축양곡의 비축 물량을 국제기준보다 확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 법 문구로서는 국제기준이라는 말 자체가 딱 정해져 가지고 ‘국제기준이 뭐다’ 여기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표현상도 문제가 있고 이런 내용도 국제기구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조금 시비를 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은 수용하기 조금 어려운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항에 밀·콩 공공 비축·운용 비용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곡관리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고 밀·콩에 대해서는 농안기금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용의 탄력성이나 이런 결로 보면 기금에서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양곡관리특별회계가 사실상 돈이 있어서 이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고 또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쌀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쌀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하고 밀·콩은 농안기금에서 하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의 의무수입양곡의 실태조사 실시 및 국내 방출 제한 근거 마련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법에 넣어 놓게 되면 WTO나 상대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모니터링을 할 거고 저희들한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분쟁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이걸 법에 안 넣어 주셔도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하고 방출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안 되게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는 안 넣어 주셔도 될 것 같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미곡의 매입·판매 대책 수립 의무화인데 이것은 과잉이 되거나 그랬을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의무 매입 조항입니다. 이것은 수차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재의요구도 된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의무 매입 조항은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인용 법률 제명 현행화 이것은 타당한 내용이어서 저희들은 동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양곡가격보장제 신설도 다음번에 논의하게 될 농안법하고 같은 내용이어서 저희들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가격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용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동일한 내용입니다.

31페이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에 있었던 의무 매입 조항이나 가격 보장하고 관련된 내용을 심의 사항에 넣는 것은 앞에 내용을 저희들이 반대했으니까 여기에서도 좀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의·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의결’만 빼면 저희들이 충분히 다른 내용들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34페이지 같고요.

35페이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운 적정가격보장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16조의4(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 재배 지원)은 저희들이 수용하는 내용이고요 문구만 조금 더 다듬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7페이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에 대해서 1항은 동의하는 것이고요.

38페이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39페이지, 아까 앞에 나온 내용하고 중복됩니다.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 재배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에 1항, 2항, 3항 나와 있는 거 동의를 하는 내용이고요.

40페이지 마찬가지고.

41페이지, 여기구 의원님 안에 ‘타작물 재배나 휴경 등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했는데 휴경 의무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16조의2에 타작물 재배 근거가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조항에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4항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미곡관리시스템의 구축·운용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내주신 안이니까 좀 정리해서 하나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입니다.

선체적 수급조절, 아까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16조의4 관련된 내용이고 이것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46페이지, 양곡 생산자단체 설립 근거 규정은 이 조항에 없어도 민법상 설립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따로 둘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입니다.

양곡유통업 육성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내주셨기 때문에 정리해서 같이 하나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50페이지,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모아서 하나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1페이지, 부칙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 제안대로 1년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양곡법에 쟁점이 많다 보니까 일괄 설명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그런 건데, 48페이지에 제 안하고 다른 의원님들 안이 다르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표현…… 이분들도 다 지방자치단체장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위원님은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했는데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범위까지 포함하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지방자치단체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여기 다른 윤준병·신정훈 의원님 안처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다 포괄을 해서……

○정희용 위원 이분들이 다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양곡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광역인지 기초인지 정의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희용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용어 안에 광역, 기초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그렇게 되면 윤준병 의원안 또는 신정훈 의원안 이 안으로 표현을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질의하실 위원님들 손 한번 들어 주시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준병 위원님.

일단 지금 조항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부터 질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이 법안 마지막에 정리할 때 조문대로 의견을 물어 가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조문별로 내용과 관련해서 또 하실 거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일단 위원님들 제가 볼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편하게 하실 말씀 하시고.

○소위원장 이원택 예, 위원님들 편하게 하실 말씀 관심사항별로 하시고 마지막에 조문별로 하는데 쟁점이 너무 크면 조문별로 의견을 묻는 것은 오늘 법안 심사 뒤로 미뤄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윤준병 위원 지금 농식품부에 양곡, 특히 수입 양곡과 관련된 내용의 입장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물론 지금 WTO나 여러 가지 국제기구들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수입 양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리 형태나 또 관리 방법 이런 내용들을 좀 강화해서 국내에 들어온 수입 양곡에 대한 운용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고 제도화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그 취지가 여기에 제도화한다고 그래서 그게 몰각된다 또 우려가 있다 이렇게 단정하고 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제도 수입 양곡과 관련된 수입업자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의원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거나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자료조차도 제출하도록 하는데 그것 가지고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도 제대로 안 돼서 어제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는 틀을 입법화해서 만들겠다 하는 내용은 농식품부에서 좀 고민을 해 줘야 될 영역이 아닌가. 그걸 단순히 외국의 WTO나 이런 국제기구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만 가지고 내부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방어하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과 관련된 몇 가지 죽, 수입 양곡과 관련된 내용이 몇 개 조문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의 일관된 내용은, 차관 답변으로는 그런 내용이어서 그 것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논란이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양곡과 관련해서 가격기준을 정할 수 있느냐 없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선행적으로 제도적으로, 가격기준의 명칭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일단 그런 제도가 운영된 전례가 있는 것은 명확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운영이 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이 도입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실제 그려는 건지, 정부에서 늘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기준 가격이나 적정가격이라는 용어가 책정되면 쏠림현상이 있을 개연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양곡의 운영에 여러 가지 장애 문제를 야기할 개연성이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이번에 농산물가격안정제를 전체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예전에 얘기했던 미곡에 대한 쏠림현상은 사실상 그렇게, 뭐 있을 개연성이야 있겠지만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게 기준에 주장했던 논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된다, 농산물 전체에 대한 가격안정제를 운영하는 것이 단순히 미곡에 대한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가격안정제에 관련된 내용 틀을 놓고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사후에 여러 가지 가격안정제를 도입하지만 선행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게 생산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생산 조정과 관련된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조금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재배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더 내실 있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좀 강제적인 수단까지도 뒷받침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간접적인, 강제라고 할까요? 이런 걸 실효적으로 담보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산자단체와 관련된 입장 하니까 ‘민법에도 있으니 이건 중복 소지가 있으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게 그렇게 하게 되면, 공공단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야 다 똑같은 내용이지요.

다만 여기다 넣고자 하는 취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영역에 좀 담아서 여러 가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어서…… 그런 내용들, 특히 농촌의 여러 가지 생산자단체들이 계속 주어져 있는 여건 속에서는, 주변 여건들이 악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라도 이렇게 입법화를 통해서 존재의 근거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 내용도 좀 강화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취지라는 점을, 본래 입법 발의했던 취지를 좀 이해해서 농식품부가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담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양곡 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조항, 수입하고 관련해 가지고 조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여기에 ‘수입 양곡을 구분 관리해라’ 그런 식의 조항을 넣기보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국내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수입 양곡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 정도로 해 가지고 다른 데다 넣으면, 그런 정도로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 안을 줘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 안을 저희들이 한번 따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격기준 정하고 가격안정제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과거에 전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변동직불금하고 목표가격을 했었고, 그전에 정부가 수매제를 할 때는 수매가격을 정해 가지고 그걸 고시하고 그렇게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과거 정부에서 전부 다, 목표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없애고 공익직불 방식으로 저희들이 바꾼 것이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하고 농업인의 수입 소득하고의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은 국제기구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가격 개입 방식에서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전체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번 주, 다음주까지는 아마 가격 안정보다는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틀을 농민단체들하고 상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면 보시고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 조정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다만 이것을 법에 의무로 부과를 하느냐 아니면 정부가 예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원해서 하느냐는 다른 측면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에다가 정부가 강제로 조정을 하게 하고 그것을 위반하고 안 지켰을 경우에 농가들을 처벌을 하고 그런 조항을 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전략작물직불이나 정부 재정사업을 가지고 농가들을 지원해가면서 끌고 가는 것이 더 나은 건지 그것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생산자단체 육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고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에 이 양곡관리법상 특수법인으로 만들 것이냐 일반법인으로 할 것이냐 그 차이인데요. 이것이 현행 조항에도, 양곡 유통 관련해서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조항 근거가 현재도 있고요.

다만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근거를 새로 그 조항 하나만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특별하게 더 기능을 부여해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기능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어떤 특수법인을 만든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한 독점적인 배타적인 뭔가 권리를 주고 의무를 주고 하게 하는, 그 내용이 이제 법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 법에다 특수법인으로 만들어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조항으로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애……

손을 들어 주시면……

○**임미애 위원** 저는 수입쌀의 유통과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시중의 소비자 입장에서 갖는 우려, 실제 유통에서 이게 부정 유통이 되면서 단속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갖는 불안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수입쌀이 어떻게 유통되고 어떤 점검 절차가 이루어지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우선 수입쌀은 정부 양곡으로 정부가 관리를 합니다. 정

부가 직접 수입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대부분 가공용이나 주정용이나 이런 쪽으로 쓰고 있고, 저희가 쌀시장을 개방 안 하고 막고 있다가 두 번째 할 때 밥쌀용으로 15만t을 의무적으로 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밥쌀용이라고 하더라도 안 낼 수는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안 내고, 가급적 미루고 그다음에 이것을 관리하다가 몇 번 유찰이 되면 그냥 가공용으로 돌리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주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밥쌀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 나갈 때는 국내산 쌀의 밥쌀용하고 수입산 쌀 쓰는 데하고는 시장이 조금 분리돼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정유통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공용으로 냈는데, 가공용으로 했는데 그 가공업체가 그걸 뒤로 빼돌려 가지고 밥쌀용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그 경우는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산 가공용 쌀, 찐쌀 이런 것들을 그것은 수입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수입해 가지고 김밥집이나 이런 데서 원산지를 바꿔서 국산인 것처럼 속여서 파는 게 많아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단속을 좀 강화하고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가 이 법안에 의무수입과 관련된, 의무수입 양곡에 대해서 조항을 넣고 이것을 강하게 정부에서 입장을 취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가 담긴 이유는 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 때문 아니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임미애 위원 그리고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지속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농민들 입장에서는 의무수입이라고 해서 들어온 물량들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내 생산 기반을 와해시킨다는 우려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어떤 단호한 입장과 정책과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의지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실제로 이 조항과 관련돼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농가의 불만은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지를 좀 보여 주시면 어떨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것도 공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관리하겠다고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보고 뭐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의지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국내 농가를 저희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수입산을 저희들이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받아서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고 하신다고 그러면 법에다가 국내외 시장상황 이런 걸 반영을 해 가지고 내실 있게 관리하여야 된다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필요하면 관리실태나 운영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 정도를 법안에 넣어 주시면 제가 추가로 더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그런 조항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TRQ 물량에 대해서 행정부에서야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국제관계상 필요한 일이라고는 하나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습니다, 너무나 성실하다 이런 얘기, 너무나 성실하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정도로 배짱이 없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것도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한번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원래 연간 수입하게 돼 있는 물량이 있는데 그것을 못 채운 경우도 사실은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하고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차관님, 양곡법 보면 한 17개 정도 조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정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번 정리를 죽 해 보시면 정부 입장에서 가장 받기 어려운, 수용하기 곤란한 조항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의무매입 조항하고 가격보장 조항, 그 조항은 저희가 좀 받기 힘들고요.

○**이만희 위원** 두 가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다음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의결 조항……

○**이만희 위원** 그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양곡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라든지 또 그걸 위해서 의무매입을 하게 만든다 이런 것들은 다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들의 생각은, 개정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어려운 입장에 있는 농민들한테 조금 도움도 되고 또 식량안보 차원에서 양곡수급을 원활하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다 초점을 맞춘 의견들이기는 합니다. 그건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제가 경험상 쌀 변동직불금제도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2016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변동직불금, 사실은 이게 비슷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목표가격이라고 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 시장의 목표가격을 정해 놓고 그 차액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재정으로 차액만큼을 보전해 주는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거의 1조 5000억 가까운 돈이 2016년도에 소모가 된 걸로, 그때 당시 시장가격이 13만 원대까지 떨어졌었고 그때 목표가격이 얼마 정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18만 원이었나 17만 원이었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18만 8000원.

○**이만희 위원** 18만 8000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이만희 위원** 그 차액만큼을 보전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부 측에서 사실은 20대를 거치면서 내놓은 대안 중의 한 가지가 공익형직불제도였습니다. 공익형직불제도를 도입하면서 굉장히, 하여튼 그때 당시에 변동직불금제도를 폐지하면서 대안으로 나온 사항들이었고 거기에 여러 가지 토의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금 이 제도 자체가 몇 가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몇 가지 시그널을 잘못 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 타작물 지원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이만희 위원**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했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3년간.

○**이만희 위원** 했었는데 그 제도가 비교적 농림부 정책 중에서는 양곡관리에 있어서는 성공적인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갑자기 그걸 폐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공익형직불제도도 도입을 하고 또 쌀, 타작물 재배지원 도입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가는데 왜 이걸 없애냐…… 그때 당시 예산이 한 1500억 정도였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걸 없애서 제가 항의를 하고 물으니까 한다는 얘기가 재정 당국에서 도저히, 3년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그게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결국 의무매입이라든지 가격보장제는 또 다른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어쨌든 우리가 양곡이 많이 생산되고 소비가 줄어드는, 수요와 공급의 입장에서 보면 공급파트를 어떤 식으로든 줄여 나가고 수요는 늘려 나가는 게 하나의 가격을 높이는 방안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이만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놓은 이 내용들이, 의원들이 제시하는 이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에 아니면 또 농민들한테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이만희 위원** 그러면 다른 아까 세 가지 조항들, 양곡가격 보장이라든지 의무매입이라든지 또 의결조항이라든지 이것만 제외된다면 다른 부분은 거의 다 합의가 가능한 사항이라는 판단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 어쨌든 의무매입이라든지 또 양곡가격 보장을 적극적으로 안 된다는 그 논거를 간단하게만 말씀해 보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 변동직불이 있었고 그게 공익직불로 넘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격을 지지해서 농가를 도와줄 것이냐 아니면 소득을 지원해 줘서 할 것이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공익직불로 바꿀 때 그때 농민단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설득했던 방식도 그렇고 이렇습니다. 변동직불제라고 하는 방식은 가격이 떨어져야만 발동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공익직불은 가격하고 관계없이 농가한테 일정 부분을 소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했고 지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직불제를 5조까지 예산을 늘리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그렇게 안 하더라도 5조를 만약에 공익직불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농가당 농업수입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농가당 한 500만 원을 연간 지원하는 방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보장이라는 방식보다는 수입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소득을 지원해 줄 것이냐 그 조항이 훨씬 더 낫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수입안정보험 방식도 도입하고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공익직불도 확대하고 직불을 확대해서 5조까지 늘려 가겠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가격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농가 소득은 어느 정도는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타작물 재배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때 3년간 저희들이 하고 중단을 했던 게 말씀하신 대로 재정 당국에서 ‘이게 안 된다. 예산 반영이 어렵다. 당시에 3년 한시로 했으니까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근저에는 그때 3년을 하면서 우리가 쌀 생산을 조금 줄여 가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쌀값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쌀값이 이렇게 높은데 굳이 타작물 재배를 해야 되느냐, 그게 재정 당국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도 안 먹혀서 그랬는데 지금 양곡관리법의 원님들께서 넣어 주시는 대로 타작물 재배를 완전히 법에다 넣고 그렇게 운영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정하게 면적을 관리해 가면서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거기에 타작물 재배를 넣고, 그런데 여기서 의무매입 조항이나 가격보장 조항을 넣게 되면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타작물 재배로 갔던 게, 한쪽에서는 타작물 재배로 전환시켜 가는데 타작물 하던 사람이 다시 쌀로 회귀하는 것 그게 저희들이 가장 걱정인 겁니다. 사실은 그때도 3년간 줄였던 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바로 다 쌀로 회귀했던 경험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저희들이 면적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작년에 가격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측으로는 작년에 타작물로 갔던 사람들이 한쪽에서 우리가 줄였는데 더 이렇게 돌아와서 면적이 생각보다 줄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제일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논에다가 벼 심다가 다른 작물을 금방 심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기존의 논을 거기에다가 다른 작물을 심어서 일정한 소득과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상당한 비용도 발생한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공익형직불제도를 정말 더 정치성 있게 또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그것은 제 지역구 쪽만 말씀을 드려도, 예를 들어서 영천 같은 경우에는 공익형직불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81억의 직불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익형제도로 바꾸고 나서는 거의 181억 가까이 지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2조 4000억, 지금 3조 1000억인 단계에서 이 정도 나왔으니까 이게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5조까지 늘어난다면 그 금액 자체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위원들에 대한 설득이라든지……

이번 올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23년도만 보더라도 초과생산량이 10만t이 많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이만희 위원 그것 다 백날 소용없잖아요. 지금 수매 들어간 미곡만 하더라도 20만t 이상 사들이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래도 가격은 지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불을 5조까지 하기로 했고 작년에 사실은 농업인의 날 대통령께서 5조를 지키겠다고 말씀까지 직접 본인의 입으로 하셨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고 부족한 부분 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지금 윤준병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 손을 드셨는데요.

○문대림 위원 타작물 관련해서……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발언 순서인데 윤준병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대림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 해 주십시오.

○윤준병 위원 우리 농식품부 또 윤석열 정부하에서 과연 농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마 목표는 비슷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또 농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 보면 사실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농산물 가격과 관련해서 가격이 소위 올라가면 폭등이라고 네이밍을 붙이고 개입을 합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정부가 사실상 방치합니다. 하는 시늉을 보이지만 실제 이행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작금의 인식이지요.

특히 2022년부터 쌀값 폭락 이어져 왔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변동직불에서 공익직불로 바꾼 내용과 관련해서도 옛날이 훨씬 나았다, 그때 정부에서 지금 차관 얘기한 것처럼 소득보장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주니 득이 되지 않겠냐고 설득했겠지만 그 설득받은 단체들마저도 예전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익직불과 관련된 내용의 소득이 실제 생산에 투입해서, 피와 땀을 들여서 얻은 그런 결과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게 있는 것이고요. 또 더더구나 정부가 물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가격 안정을 시키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렇게 폭락해도, 적기에 개입하라고 요구하고 그랬는데도 개입을 안 해서 결과적으로는 25%에 상당하는 근 30%의 폭락치를 만든 이후에야 개입했던 그런 전력 또 작금의, 최근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양곡관리법 개정하자 그랬더니 명분을 찾으면서 거부권 행사할 때 내세웠던 게 쌀값 20만 원 보장이라고 그랬는데 어제도 계속 얘기가 나온 것처럼 그조차도 이행을 못 하잖아요. 그런 약속 미이행 이런 것을 어떻게 담보해야 되느냐 이게 현안이지요.

그래서 누차 얘기하고 있는 게 선제적, 사전적 생산조정 제대로 해라. 법적 근거 제대로 만들어 주겠다. 대신에 그렇게 해도 이행이 안 되면 농민들이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수단의 방법이 가격의 안정제를 도입하든 의무적인 시장격리를 하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 선제적 생산조정 제대로 하고 그것 제대로 안 되면 최후 수단으로 뭔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단은 제도적으로 담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게 농민들의 요구이고 위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것 이해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윤준병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거를 같이 공유하고 고민을 해 줘야지, 그걸 ‘우리는 가격보장이나 의무매입은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선 딱 그어 놓고 ‘그거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를 도출을 못 해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는 금지의 영역이다 이렇게 선을 긋지 말고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보장 장치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러면 생산조정 또 의무격리 이게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제대로 기본 안전망으로 만들어라, 그런데 최근에 그거 하라고 그랬더니 수입안정보험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또 해요, 예전에 20만 원 보장한 것처럼.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고민을 진지하게 해서 국민들, 농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와서 이것은 이것보다 나으니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든지 그게 안 되면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심도 있게 심각하게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 반성하고 사실 충분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래도 나름 대로 노력했던 것은 이번에 가격이 올랐을 때 수급 조절하고 그려는 것도 가급적이면 농가들의 판매 수입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매상 가격이라든지 농가들이 받는 가격은 최대한 손을 대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납품가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소비자가격만 낮추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바꿔서 하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제적 수급조절이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거하고 병행해서 의무매입이나 이런 걸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그 조항인데,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수급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가격이나 농가의 수입이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도적으로 뭔가 좀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거라고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은 의무매입이라든지 가격지지라든지 이런 식의 구체적인 수단이나 내용을 좀 법에 담지 말고 필요하면, 예를 들면 양곡수급계획을 세울 때 농업인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을 하고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법에 그런 정도로 담아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우리 농업 정책의 중심이 쌀이 되어야 되는 건 인정을 하는데요. 타작물 재배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검토의견도 미곡의 수급안정과 관련하여 타작물 재배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논에서 재배하는 타작물인 논타작물로 지원대상 한정하는 것이 타당 또 정부, 농식품부 의견은 수용 이렇게 돼 있는데요. 논타작물이 지원되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과 농민이 있다는 부분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정해서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 법은 양곡관리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쌀을 줄여야 되니까, 논의 면적을 줄여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간 것 같고요. 밭이나 이런 데

서는 따로 다른 수단으로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문대림 위원** 다른 수단, 어떤 수단들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공익직불에서도 과거에는 밭직불을 논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줬었고요. 그거를 논하고 동일하게 올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선택직불을 만들면서 밭에 대한 기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제주도인 경우에 콩나물콩 재배로 인해서 작목의 다변화를 이루어 냈고 그것이 상당한 수입 구조로서 작동을 했었는데 녹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시점부터 콩산업이 붕괴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적 배려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쌀이 갖고 있는 구조적 공급 해소를 위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결말을 좀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 콩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 번 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래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원택** 전종덕 위원님 그다음에 박덕흠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이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매입하고 가격보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내용도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이 핵심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는 다 수용 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정부가 계속 후퇴·축소를 해서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비축미 매입한 이유가 뭐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공공비축미는……

○**전종덕 위원** 식량이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러니까 저희 주곡이고 그래서 이제……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주곡이라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비상시에 대비를 해야 되고……

○**전종덕 위원** 국민 식량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식량자급률을 유지해서 어쨌든 식량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 상황은 매년마다 식량이 생산되어서 과잉생산 이유를 이야기합니다마는, 식량자급률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최저이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전종덕 위원** 그래서 국민들의 식량인 이 양곡이, 특히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니까 이 주식이 자급률도 낮고 그리고 매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부에서 자급률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식량 매입을 제대로 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매년 가격 또한 시장가격에 맡기다 보니까 가격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이러면서 매년마다 40만t으로는 부족하니 여기 정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30만t에서 40만t으로 추가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공비축미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40만t으로 부족하다는 거고, 매년 추가로 시장격리 일환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비용이

최소한 80만t은 된다고 그렇게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범수** 80만t 정도 재고가 있으면……

○**전종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써져 있는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자급률 측면에서 하고 있는 정부의 매입량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 주는 것이고 또한 가격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직불금 도입해서, 공익직불금도 정부에서는 27년까지 5조 원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의 직불금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의 농업소득이 1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소득안정 차원에서 농민들의 직불금을 통해서 500만 원까지 확대된다고 하면 농민들이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쌀을 파네 마네, 이 돈을 얼마를 받네 마네 이러면서 매년마다 이렇게 혼란을 겪을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소득이 보장되고 매년 500만 원씩 소득이 보장된다고 하면 농민들이 이것을 걱정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좋은 제도라고 환영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고 가격 또한 직불금으로 안정적으로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게 지금 직불금으로 해결하면 농민들을, 농사지으면 아예 모든 걸 정부가 전량 수매해 줘서 그 수매만큼의 소득으로, 차라리 정부가 월급으로 준다든지 이런 방식도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된다면. 농민들에게 얼마 정도의 일정 부분 액수를 직불금 형태로 주는 거, 직접 지불하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국가의 식량을 생산하니까 월급을 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저는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거나 현실에 있어서는 안 되고 있고 또한 정부 정책도 소득 안정 차원에서 직불금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신뢰나 그다음에 현실에 있어서 가능한 문제냐, 이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정부가 책임 있게 식량안보 차원에서, 식량자급률을 지키는 차원에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농업 보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오히려 저는 정부가 책임 있게 농정을, 농업을 이끌어 가고 농민들의 소득 보장과 식량안보의 정책적 목표와 실현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런 방향으로, 책임 농정으로 가야 하는데 이걸 워낙 농민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시장에 자율적으로 이렇게 맡겨 버린 결과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농업이, 농업은 지어도 손해이고 매년 이런 혼란을 겪고 있고 농민들이 오히려 계속 축소되고 있고, 여기서도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지 않고 있다, 소득이 보장되고 농업이 미래가 있어야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정부 정책이 시장에 맡기고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 이 방향과 기조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것을 반대로 정부가 세워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정부의 의무매입 물량도 늘리고, 제가 다음에 심의하게 되겠습니다만 저는 최소한 70만t은 의무 매입해야 된다 이렇게 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가격 또한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공정가격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법안을 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말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농민들의 소득 보장과 식량안보 차원

에서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오히려 정부 책임 그리고 적정한 가격, 공정한 가격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양곡법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이런 법안을 정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소위원장 이원택** 차관님, 짧게 좀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조금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식량안보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면 사실 쌀이 아니라 밀하고 콩을 더 해야 됩니다. 쌀은 사실상 자급률이 100%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전종덕 위원** 다른 데는 다 100% 넘어요. 다른 나라들은 100% 왔다 갔다 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실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정부가 시장에 너무 맡겨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정부가 시장에 맡겼으면 쌀이 지금처럼 과잉이 되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가장 많이 보호하고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것이 쌀입니다. 저희가 농가의 소득을 한 3분의 1 정도,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3분의 1 정도 농업에서 얻고 3분의 1 정도 농외소득으로 하고 3분의 1 정도 정부가 지원한다, 그게 유럽도 그렇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불금을 5조 까지 늘리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정부가 지원하는 게 3분의 1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생각하는 것 똑같습니다. 농가를 가급적이면 더 소득도 높이고 가격도 좋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부작용이 너무 크게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완화시킬 수 있을지 그런 방안을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또 추가 질문할 수 있으니까요. 박덕흠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임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면 이 법안에 대해서 여부를 또 결정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차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결국 정부에서는 의무매입·가격보장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박덕흠 위원**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박덕흠 위원** 그것이 지금 쪽, 어느 정부든 간에 정부 입장에서는 다 반대해 왔던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정부가 바뀌어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박덕흠 위원** 정권이 바뀌어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쌀이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제일 혜택을, 제일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농민들은 어쨌든 볼멘소리가 제일 많이 나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까 식량 자급자족이 100%가 넘어섰다고 그랬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박덕흠 위원** 이 100%가 넘어섰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인구도 줄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쌀 생산량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면 결국은 쌀이 남아돌게 돼 있잖아요, 이치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박덕흠 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좀 대책이 나와야 된다. 지금 의무매입·가격보장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도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쌀에 대한 그 부분에 대책을, 이렇게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소비량은 줄고 그래도 기계는 마찬가지로 더 발달되고 농약도 또 더 좋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생산량은 더 늘어날 수뿐이 없잖아요. 이게 완전히 언밸런스지요.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박덕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든 하려고 해서 전략작물적불제도 하고 하잖아요. 하는데 그게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개인적으로 직불금 5조 이렇게 하지만 이런 부분을 다른 쪽으로 어떻게든 좀 생각을 해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수입안정보장보험 이걸 정말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결국은 재해든 또 가격 하락이든지 보장을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홍보를 해서 이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전에 21대 때 초에도 모 담당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환이…… 바뀐 것 같아요, 생각이.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박덕흠 위원** 이 수입안정보장보험을 어느 정도까지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주요 품목, 저희 30개 이상으로 장기적으로 늘려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쌀을 포함해서.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30개인데 결국은 보험의 예산이 문제예요, 예산. 예산은 어느 정도를 지금…… 25년도,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금년에 저희 시범사업 예산보다 제 기억에…… 금년 예산이 88억이었고…… 금년 예산이 81억 정도였고 내년에는 아마 2000억이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또 88억이고 81억인가는 제가 그때 계속 주장을 해 가지고 조금

그렇게 올라간 거였는데 어떻게 됐든 대폭적으로 이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수입보장보험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이쪽 방향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의무매입이나 가격 보장이 정 안 된다 하면 이쪽으로 예산 투입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돼서 농민들이 또 안심하고 농사를 짓을 수 있게 방향을 바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지금 법안 심사를 하는데 토론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돼 가지고 법안 심사가 될까 하는 생각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가 됐잖아요. 재의요구권이 됐는데 이번 올라온 양곡관리법하고는 내용이 많이 상이한 부분…… 초과생산량 3%, 쌀값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매입을 의무화했던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들이 정리를 했는데 지금 차관님은 일관되게 가격정책에서 소득정책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전체적인 기조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가격지지정책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선택의 문제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하면 가격도 가격 정책을 취하는 동시에 소득정책으로 직불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완해 나가야 되는 문제지 이게 가격정책이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고 소득정책으로 대체해 나가겠다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입안정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7개 품종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현재요.

○**임호선 위원** 그것도 시범사업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과연 대상 품목과 지역을, 이게 일시적으로 확대가 가능한지 하는 부분이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저희가 양곡관리법에서 쌀값 지지하는 것을 지금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고스란히 남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농민분들도 마찬가지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거고 수입안정보험은 안정보험대로, 사실 투 트랙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선택적으로 갈 문제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득 안정, 수입 안정하고 가격 지지하고를 같이 갈 수 있느냐 그 문제인데요. 그걸 사실 같이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지지해 가지고 충분히 수입을 보장해 줬는데 그러면 소득까지 추가로 돈을 더 줘야 되느냐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의 제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더 좋은 방법을 찾자고 한 게 저희들이 가격보다는 수입이나 소득 안정 쪽으로 가는 게 농가를 위해서도 더 바람직하고 또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지금 법안 심사하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쟁점이 있는 법안인데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법안은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입쌀과 관련해서 관리하는 것이 국내 유통업체도 있고

수입쌀 업체도 있는데 그 수입쌀 업체들을 차별화하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국내 업체나 수입쌀 업체나 공정하게, 또 평등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우리 농업에 영향을 주는지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앞으로 수입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업체들을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걸 좀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양쪽 다 우리 국민의 물가와 또 농업의 이익을 위해서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저희가 계속해서 수입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정책적으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를 잘, 퀘스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 양곡관리법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큰 틀에서 보면 변동형직불제에서 공익형직불제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데 변동형직불제는 목표가격을 정하고 거기에 미달했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나 변동형직불제에서 공익형직불제로 넘어갈 때 사실 변동형직불제는 논을 대상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주 대상이 논이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쌀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공익형직불제로 갈 때는 밭이 포함됐지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부의 갈등이 있었던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밭으로 확대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밭으로 확대되면서 예산도 늘어난 거고 그때 약속한 것이 시장에서 초과 생산됐을 때 과감하게 시장경쟁을 통해서 쌀값 안정을 보장하겠다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나 막상 공익형직불제로 전환됐을 때의 성과도 있지만 쌀농업에서는 이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쌀값이 하락됐고 정부가 약속한 과감한 시장격리조치들이 예를 든다면 찔끔찔끔 뒷북으로 진행되면서 현실적으로 쌀값은 안정화되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를 평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첫 번째는 쌀의 초과생산량이 많으니 쌀 재배면적을 줄이자 해서 사전 재배면적을 줄이는 작업을 하나의 주요 정책으로 했던 거지요. 기재부가 그것을, 재정 당국에서 원래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제가 그때도 그걸 막으려고 정말 문재인 정부 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그게 뼈아픈 교훈이지요.

그때 논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발전시켜 갔어야 하는데 그때 농정 당국도, 사실 김현수 장관도 적극적 방어를 안 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농정 당국도 적극적 방어를 안 했고 재정 당국도 소홀히 했던 거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쌀값 피해의 후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당초 약속했던 대로 시장격리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후행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정부의 선의만을 믿고 갈 수 없으니 제도화하자라고 해서 의무화법이 나온 거다.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전적으로 쌀값을 제대로,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정책이다, 양곡관리법에 꼭 포함돼야 할 정책이고 이것은 지금 정부와 저희들하고 차이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일시적으로 초과생산량이 나왔을 때 쌀값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인데 우리는 의무매입제를 하자는 거고 정부에 맡겨 달라 이런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정부는 하겠다는 거고 우리는 정부의 선의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거고 그 과정을 저희가 정권이 교체되고 윤석열 정부 2년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아까 소득지원을 통해서 농민의 농가소득 안정을 지지하겠다라고 그랬는데 한번 지난 2년 반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농업소득이 900만 원대로 떨어졌다가 이번에 1100만 원으로 돌아왔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 정도로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농가소득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를 저는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농가소득은 하나는 농작물 판매를 통해서 얻는 소득이 있고 직불금을 통한 소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양대 축이잖아요. 양대 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때 의무매입제가 도입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변동형직불제가 문제가 뭐였나 하면 목표가격을 정했는데 이게 인위적인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게 인위적인 가격이 아니라 시장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자는 거지요.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된 시장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차액이, 일정한 차액이 발생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자는 것이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의 가격안정제도입니다.

가격보장제라는 말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적정가격이라는 말도 적절하지 않고 가격이 요동을 쳤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사후적 조치로서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소득을 지원하는 직불제도와 더불어서 아까 임호선 위원님이 얘기했던 가격변동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제조업에 비해서 1.5배잖아요.

농산물은 공장도가격을 매길 수 없나요? 저는 가격 변동률을 줄이고 가격의 안정적인 것을 했을 때 농업의 소득이 올라갈 거고 농산물의 어떤 수량도 늘어날 거다. 그러면 도시민들도 소비가 더 좋아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득지원정책과 더불어서 가격에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제도다. 이것이 상시적으로 발동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점에서 정부도 제도의 진화인데 과거의 변동직불제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걸,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연 농업소득이 1000만 원, 1100만 원 이쪽저쪽인 우리 농업이 적절한 전지에 대한 판단이 저는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가격이 위협이 발생했을 때 완충해 주는 제도로서의 의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격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개념으로서의 제도의 진화를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양곡관리법의 가격을 완충해 주고 위험을 막아 주는 측면을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제도의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양곡제도의 변천사에서 성과와 교훈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이 마지막 말씀 하시는데 이 법안은 계속 뒤로 미루어서 오늘 마지막에 또 의견이 있으면 듣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 위원** 정희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차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야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쌀농사를 지으시는 농민분들이 너무 어렵고 어떻게 좀 덜 어렵게 해 드릴까, 또 안정적으로 해 드릴까, 또 대한민국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쌀농사 지으시는 분들의 노고와 헌신도 잊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정희용 위원** 그런데 의무매입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는 구조의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쌀 생산량이 준 것보다 쌀 소비량이 급격히 주니까 구조적으로 과잉이 되는데 이거를 해소하는 게 시급한 문제다, 이거는 제가 쌀농사 지으시는 농민분들하고 말씀 나누면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나라에서 이것 좀 잘 정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음이고 스스로는 조금, 익숙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내려 놓기는 조금 또 곤란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적 과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 농사지으시는 분들 힘드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거를 잘 해 가지고 정책을, 3%, 5% 안에 안 걸리게 잘 운영하면 의무매입 조항이 발동 안 하지 않느냐, 그러면 정부가 잘하면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법으로 만들어 놔도 잘만 관리하면, 발동이 안 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의 핵심은 결국 공급과잉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의무매입 조항을 해 놓으면 정부가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공급을 줄이지 않으면 과잉이 계속됩니다. 결국 사 주는 구나, 많이 해도, 기존대로 해도 정부에서 다 사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지금. 그러면 하자,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지혜를 좀 모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쌀농사 짓는 분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타작물로의 전환을 우리가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미래농업, 청년농업 또 고령화돼 가는 고령농 또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어떤 인센티브 혜택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전 국민들이 그 부분을 알면, 쌀농사 지으시

는데 보전해 주는 것보다 이 비용을 공급과잉 구조를 해소하면서 미래농업으로 전환되는데 쓰는 게 맞다, 합리적이다, 이런 거를 농사지으시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거주하는 도시민들, 국민들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노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쌀농사 지으시는 분들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전 국민들한테도 우리 세금이 제대로 미래를 위해서, 미래 농업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진척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쌀농사 지으시는 분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은 저도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도 다 수긍을 하는데 이 구조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또 우리 농업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법안심의를 하면서 논의를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원택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는 또 추후에 더 논의하자고 하셨으니까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지금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합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쟁점 부분들이 있는데 합의를 이루는 부분은 여기서 결정을 하고 쟁점이 되면 보류하기보다는 일괄적으로 일단 마지막에 또 더 의견 교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고.

지금 다음이 농안법하고 농어업회의소법 심사인데 이 심사는 좀 뒤로 미루고 뒤에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그다음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두 법안을 심사하고 점심 들어갔다가 다시 속개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정희용 위원** 점심 먹고 심사하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점심 먹고…… 아니, 두 가지는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두 개 법은 쟁점이 없는 법안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문대림 위원님.

○**윤준병 위원** 아니, 문금주 위원님.

○**소위원장 이원택** 아, 문금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문금주 위원** 문금주입니다.

○**윤준병 위원** 비슷해 가지고……

○**문금주 위원** 다들 비슷한 얘기라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양곡관리법은, 아시지요? 왜 저희들이 당론으로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는 아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문금주 위원** 중요한 게 의무매입하고 양곡가격 보장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가 없으면 저희들도 물론 다른 조항들도 합의된 내용들, 쟁점이 없는 내용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안 되면 참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지금 기재부한테 좀 밀려서 어떻게 보면 물가안정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 하고 그러지는 않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문금주 위원** 그런 건 아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문금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선제적으로 못 하는 거예요, 시장격리를? 아까 차관님께서 농민단체 의견도 앞으로 들어서 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농민들이 현장에서 시장격리를 빨리 해 달라고, 선제적으로 해 달라 요구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어제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드렸을 텐데요. 작년 수확기 때 분명히 농민단체, 농협, 정부, 같이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모여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9만 5000t이 과잉이니 그것만 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합의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0만t을 격리를 먼저 했습니다. 그때 그때 10만t을 격리를 하면서 수확기 쌀값이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받는 쌀값은 20만 원이 넘는 기준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는 그렇게 혜택이 다 돌아가게 만들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 이후의 문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농협의 재고 문제였고 그래서 농협한테 먼저 이거를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농협이 그게 늦어졌고 그러면서 10만t이 과잉이라고 해서 정부가 10만t을 격리를 해 줬는데 농협에서 와 가지고 이제는 15만t을 더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저희가 10만t이 과잉인데 어떻게 15만t을 지금 와서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농협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야 그거를 보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문금주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생산량 감소를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재배면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8월 15일, 9월 15일 해 가지고 두 번의 작황조사를 합니다.

○**문금주 위원** 제가 일부에서 듣기에는 그 작황조사가 너무 옛날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괴리가 생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것도 해 보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소비량 조사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성을 높여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정책 타이밍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니까 지금 자꾸 이런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제가 들어 보니까 점심 일정이 계신 위원님이 계셔서 오늘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마치고 2시에.....

○**윤준병 위원** 그렇게 되면 발언 하나만, 제가 차관님께 들어 보고 정회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오늘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심사를 하고요.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오후 2시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농안법하고 농어업회의소법은 좀 뒤쪽으로 미루고 그 순서대로, 나머지 차순대로 이렇게 순서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식사 장소는 본관 2식당이라니까요,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유야 여하튼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제조업에 농업을 희생시킨 결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수입 40만t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윤준병 위원**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부가 수입해 오는 만큼 그거를 시장격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농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공비축하고 시장격리, 정부관리양곡 하는 거 40만t, 수입 물량만큼 빼 가지고 그 내용이 시장에 일단, 물론 수입곡에 대한 관리를 하지만 상정적으로 그 부분만큼 격리를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건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작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쌀값 하락과 관련해서 농협의 이행이 제대로 안 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농식품부가 진짜 무능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농식품부가 농협에 지금처럼 매입하도록 하고 이거 그쪽에다가 맡기지 말고요 정부가 직접 하세요, 공공비축미처럼. 내부적으로 조율해야 될 행정 기능을 제대로 조율을 못 해 놓고 그 실패의 결과를 농협에 탓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정부당국자들이?

그리고 그 결과가 낳은 내용은 이유야 여하튼, 예측을 잘못했든 또 농협이 가지고 있는 재고물량 파악을 제대로 못 했든 이거는 농정의 능력이지요, 그게. 그걸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쌀값이 이렇게 하락해 가지고 농민들의 아우성이 이렇게 큰데 ‘야, 농협 너희들 재고물량 제대로 안 했고 너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야 되겠어요? 그건 내부적으로 농식품부에서 농협을 통해서 양곡을 관리하겠다고 했다면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그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능력이지, 못 해 놓고 그걸 가지고 농협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는 그런 내용은 농식품부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결과치로 쌀값이 하락했으면 책임지고 쌀값이 복원되도록 만들든지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능력이지 그걸 못 만들어 놓고 농협 탓하고 있고 농협이 그래서 그렇고 이건 농정 능력의 무능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윤준병 위원님 말씀을 오전의 마지막으로 해서요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원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오전 회의 마지막에 안내했던 대로 농안법과 회의소법은 좀 뒤로 미뤄서 심사를 하겠고요.

2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4)

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5)

○**소위원장 이원택** 지금부터는 의사일정 25항부터 27항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자료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신.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주요 사항 설명을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지금 건이 3건인데요 각각 별건이라서 심사자료 4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4번 이원택 의원님 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기본계획 포함사항에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저희 검토의견은 수정 필요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은 제3호의 시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는바 제3호에 괄호로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았고요.

그렇게 되면 제4호에 따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재원 지원’도 기본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고.

개정안의 6호는 삭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인데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의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개정안에 신설하는 내용인데 검토의견은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현행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법에서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금지하고 있고 이미 다른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대체적으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2페이지, 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6호로 개정안 내 주신 것을 3호에 포함해서 해도 그게 모양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6페이지의 법인 설립 근거는 원안 동의합니다.

8페이지의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의 여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정책심의회나 또는 직불제운영심의위원회에서 잘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시겠습니까?

보니까 제가 발의한 법안이어서 제가 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페이지, 3페이지 그렇게 수정 조문하는 것 저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마지막에 위원회 심의를 지금 포괄적으로 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차관님, 실제 정책심의위원회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때 각 위원회를 재정비할 때 과연 이게 실효적이냐라는 논쟁을 많이 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나 이럴 때 하고 있고요. 전체위원회도 있지만 분과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각 국에서 담당하는 데별로 해 가지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분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분과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예를 들면 축산 같으면 축산단체들하고도 모이고 축산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원예 같으면 원예 쪽으로 하고 이렇게 분과별로 해 가지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차관님, 지금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현황이랄까 또 분과별로 운영된 현황이랄까 거기에 소속된 분들 현황이랄까 이런 것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것은 정부안에 저도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에서나 아니면 여기 보니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활용한다고 돼 있는데 어느 쪽이 맞을까요? 아무래도 정책심의위원회를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사실은 지금 정책심의위원회는 농식품부장관 직속이고요, 농특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서도 하고 사실은 저희들도 하고 이렇게……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양 축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저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감사합니다.

○문금주 위원 위원들은 비슷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들은 중복되는 분들도 꽤 있고요 또 다른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명단도 저희들이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한번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결정은 조금 이따 하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법안을 상정……

○이만희 위원 의견 다른 것 없으면 그때그때 의결해서 나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지금 이 건이 3건인데요.

○소위원장 이원택 연달아 있습니다. 이것 마치고……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뮤어서 의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제명의 안철수 의원안인데요, 심사자료 5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농지의 이용 증진 및 보전 목적을 기본계획에 넣는 내용인데요, 저희 검토의 견은 수용입니다.

식량자급률 달성을 등 식량안보의 확보와 농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고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도 원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혹시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또 다음 법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6번입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생계유지 등 사유로 일정 금액 이하의 농업 외 소득을 얻는 사람의 농업인 자격 배제를 금지하는 내용인데 저희 검토의견은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기준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한계가 있고 현행 법령상 농업인으로 인정받는 경우 농민수당 등의 지급대상으로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그 과급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에 복지나 세제혜택, 농민들이 받는 혜택들이 열거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것은 저희도 수석전문위원님 의견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정의 조항에다 이런 걸 넣기보다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개별법에서, 예를 들면 소농을 지원하는 사업 같으면 조금 더 큰 농가는 배제를 시키고 또 큰 농가들이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다가는 이런 농가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놓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의원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개별 사업이나 이런 데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준병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윤준병 위원 저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법 취지가 개별 정책 지침이나 이쪽에서 살아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좀 있어야지……

사실 우리가 농촌에서 소위 농민연금이라든지 또 고령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윤준병 위원** 그런데 농업 외 소득이 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막 배제하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원래 농민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이런 내용까지 구체화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한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윤준병 위원** 그러면 그냥 막연히 ‘정책에다 반영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 내용과 관련된 입법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보완하겠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줘야 그 정도 되면 여기에다 지금 담고자 했던 입법 취지가 살아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윤준병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이 가능하면 해 줘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여기에서 농업인이라고 하는 정의는 대통령령에 미뤄 놓은 것으로 보면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판매수입이 100만 원 이상이면 다 농업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구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정의 조항에서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다가 ‘이 경우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배제하지 말라는 거니까 사실은 현행에 있는 조항하고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거니까 그런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들은 각 개별 사업의 사업시행지침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농직불 같으면 소농직불은 0.5ha 미만만 대상이 된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을 배제할 수…… 당연히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배제를 해야 되는 것 이겠고요. 또 여성농업인 특화건강검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여성농업인이라고 또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각 개별 사업마다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케이스마다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임호선 위원** 제가 이것을 낸 것이, 현장의 의견 들어 보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들었습니다.

○**임호선 위원**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에 지금 시골에 잘 아시다시피 주간노인보호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농업인 자격을…… 4대 보험 적용된다는 이유로 사실은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배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게 중앙정부 시책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임호선 위원** 그런데 4대 보험 적용된다는 이유로 배제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특히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 느끼는 절망감은 현장에서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것을 입법하게 된 건데, 차관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우선 전국에 그런 실태조사가, 그런 조사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없으신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특히 지역사업은 더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현장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요구가 있고,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통령령에서 그렇게 정함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명확히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취지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정부에서 수용이 곤란하다고 하면 이것은 입법을 통해서 개선하는 대신에 어떤 식의 정책적 보완책을 강구하겠다, 특히 기초지자체에 관한,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우선 하나 생각나는 것은 저희 농림사업 시행지침, 고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특히 여성농업인이나 이렇게 해서 배제하지 않아야 된다, 배제하지 말아야 된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농식품부를 구속하는 내용으로 하나를 넣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저희 것보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더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지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지자체가 이렇게 배제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뭔가 조금 페널티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그렇게 안 하고 더 잘하는 데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정치하게 다듬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손을 들어 주시면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 차관님, 이게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농업 외 소득이 많았을 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소득이 많았을 때 농가로 보는 거고 농업 외 소득이 많았을 때는 농가에서 제외를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정의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농업인은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산물 판매수입이 100만 원 이상인 사람으면 다 농업인에 해당이 됩니다.

○김선교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이라고 주잖아요. 그리고 광역지자체에서 농업소득을 기회소득으로 해서 경기도 같은 데는 또 주거든요. 이번에 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기에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이나 이런 것을 줄 경우에 어떤 지자체는 가구 단위로 주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농업인 개인 단위로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개인 단위로 줄 때는 농업인확인서를 달라,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경영체 등록돼 있는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농가마다, 이제 우리는 정부사업이나 이런 게 필지나 가구 단위로 주다 보니까 가구주 한 사람이 농업인경영체 등록이 돼 있으면, 농업인 여부하고

관계없이 경영체 등록이 돼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증명을 해 주면서 그 밑에 공동경영주 또는 같이 거주하는 사람은 동거인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들 같으면.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것에 대한 요구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들도 실제로 농업을 하고 있는데 소득신고를 하거나 할 때 자기 소득으로 안 잡고 부모님 소득으로 잡으니까 자기는 실제로 농업을 하면서도 농업인 대접을 못 받는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도 공동경영주로 하든 아니면 공동경영주가 아니라 같은 경영주로 1, 2, 3 이렇게 쓰든지 하는 제도 개선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농외소득이 있으면 공동경영주 등록 자체가 안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농외소득이 이제 많을 경우에……

○**임미애 위원** 많을 경우가 아니고, 이 많다는 게 사실 차관님께서는 연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면 농민으로 본다는 그 규정에 근거하면, 100만 원이라는 게 사실 생활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 기준을 그렇게 잡았다는 얘기는 ‘100만 원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니 너 어디 다른 데 가서 돈 벌어 갖고 와서 농민으로 살아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6차 산업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조그마한 농산물 가공시설을 운영하고 있어도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지방정부에서 따로이 지침을 가지고 있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경영체 등록된 것을 갖고 와라라고 하는데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는데 뭘 어디 서류를 가지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소득의 규모가 많아서 안 되는 것은 당연히 안 되지요. 그리고 실제로 지자체에서도 3700만 원 이상의 농외소득이 발생하면 농민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동경영주로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으로는 된다는 소리인데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등록상의 문제를 바꿔 주셔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등록 조항도 저희들이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정의 조항에 농업인의 정의는 포괄적으로 정의가 돼야 되는데, 농업인의 정의는 판매수입이 100만 원 이상, 작업일수가 90일 이상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지원하는 사업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지원 사업의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동경영주로 현재 등록이 안 돼 있어도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정한다면 사업시행지침에서 이런 경우는 공동경영주가 됐든 아니면 경영체 등록이 안 됐든 이 사람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우선은 가능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경영체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시면 27항은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차관님께서 정의 개념을 법제화하기보다는 실질적 개선 조치를 각 사업별로 검토해서 개선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등록 문제를 포함해서 이것을 오늘은 계속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고요.

차관님께서 개선안을 우리 위원님들 실에 9월 중에 주셨으면 좋겠고 9월 첫 농림법안 소위 때 그 개선안이 충분히 납득이 되시면 그때 이 부분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팬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월 첫 번째 법안소위 때, 임호선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첫 번째 회의 때 다시 한번 이 논의를 해서 결론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팬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5항 및 2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7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법안소위 때 심사할 수 있도록 차관님께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2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0)

2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8)

3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5)

(14시35분)

○**소위원장 이원택**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소위 심사자료 7번 자료입니다.

주요 내용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생략하고 2페이지에 선택직접지불 제도의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를 공통적으로 추가하고 생산조정 또는 경축순환직불제도를 추가하는 내용인데 저희 검토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선택직불제도 개념의 명확화 관련해서 각 조문에 직불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생산조정직불제도는 전략작물직불제도와 중복 소지가 있다고 보았고요. 전략

작물직불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고 탄소증립직불제도는 농림부가 2024년 시범사업으로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기능에 의결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운영 횟수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인데 2건 다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동 심의위원회는 구성된 이후 2024년까지 한 번도 회의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 중복 위원회 또는 회의가 적은 위원회는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정부가 낸 다른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직불 운영 협의회로 비상설화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9페이지의 24조에 수시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건데 현행법에 따라서도 다수의 위원이 원하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는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현행법 시행령의 60조 1항에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률로 격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정보의 내실 있는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현행법 제5항의 대통령령 위임사항에 동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선택직접지불제도를 4호, 5호, 6호를 해 가지고 늘려 주시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대안으로 위원님들 취지를 더 반영해서 하자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있는 2항하고 현행 3항을 합쳐 가지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항의 선택직접지불제도는 현재 '1. 친환경농업 2. 친환경축산 3. 경관보전' 이렇게 돼 있고 3항에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2개가 사실은 쪼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3개는 반드시 해야 되고 나머지 것은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2개를 더 묶어서 '장관은 예를 들어서 공익적 기능, 소득 안정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필요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불금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시면, 2항하고 3항을 묶어서 같이 한번에 해 주시면, 필요하면 앞에 예를 몇 가지를 더 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묶으면 조문이 더 깔끔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의 공익직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넣는 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대로 심의위원회인데 이것을 의결기능까지 넣게 되면 의결을 하고 시행이 안 됐을 때, 만약에 그게 안 되게 됐을 때 다시 돌아와서 또 의결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결기능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4조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개정안 내 주신 게 정기회·

임시회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소위원장 이원택 24쪽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10페이지의 24조 4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개정안 내 주신 게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걸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니까 제 생각에 4항을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명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대안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것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을 반영도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차관님, 제가 다른 저기 때문에…… 이것 직접 개정안하고 내용은 그게 없는데 반드시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먼저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 같은 경우에 현재 현장에서는 직불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다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제도 운영상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세심하고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특히나 직불금은 소유자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경작자에 따라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런데 많은 현장에서는 현재 경작자가 아니라 소유주한테 직불금이 들어간다는, 지불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내용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내용이 뭐 때문인지는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예를 들어서 8년 자경하면 양도소득세 면제된다든지 이런 세제상의 문제들 때문에 사실상 현장에서는 경작자에게 다른 뭘 받는 것 대신에, 임차료 대신에 직불금을 땅 주인이 가져간다 이런 쪽의 얘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 가지하고.

두 번째 문제는 휴경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내가 땅을 소유는 하고 있지만 여기 농사는 내가 안 지어요. 그렇다고 남한테 임대하는 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일종의 묵히는 거지요. 휴경지에 대해서도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이만희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변의 다른 농민들이 굉장히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휴경하게 되면 다르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두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잡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라나서 인근에 있는 농지에 오히려 피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불금은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것은 뭔가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더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들 중에서는 그 두 가지의 목소리가 가장 컸다라는 말씀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가 우선 첫 번째는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 하나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양도소득세하고 농지제도하고 그 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특히 소멸위험지역의 경우에는 8년 자경이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아예 면제해 주든지 그렇게 하는 방안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뭔가 적극적인 대응책이 나와야 되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휴경지 문제도 그냥 간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김선교 위원님 한 다음에 윤준병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차관님, 이만희 위원님에 대해 보충해서 하는데요. 이게 지자체에서 실태조사 지침을 아주 정확하게 내려보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망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소유자하고 경작자하고, 소유자가 직불금 그런 관계 때문에 또 세금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법이 그렇더라도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 돼서 그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사실 직불제가 5조까지 간다고 그러면 외국의 경우에도 그렇고 직불제 이행점검을 하는 청 단위까지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직불제를 5조를 가지고 운용하려고 그러면 그걸 관리하는 조직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장기적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차관님이 앞에 나와 있는 취지를 잘 소화해서 농식품부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그 내용은 좋고요.

다만 이 관점에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행정체계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내용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 직불금 신청제도를 운영하려면 농관원을 통해서 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하고 농지 적정성 여부를 지자체를 통해서 확인하는 이중 작업을 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윤준병 위원** 이번에 공익직접직불 통합관리시스템을 법에 규정하면서 체계화를 제대로,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면서 두 기관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 이것을 통합해서 서로 정보시스템을 가지고 확인하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농민들의 번거로움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사실 두 군데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게 한 군데로 가면 다 할 수 있게 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했는데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윤준병 위원** 그것을 법제화를, 그런 취지에서 일단 뒷받침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두 기능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스템 자체를

만드시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필요하면 이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든지,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농민들이 신청하는 과정에 번거롭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이것은 꼭 이행을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음 순서는 문대림 위원님, 다음에 임미애 위원님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선택직불제도의 종류 확대와 관련해서 경축순환직불제는 그냥 짹 없는 것같이 지나가는데 여기 검토의견에 학계에서 개념 또는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그다음에 학계 의견 이런 얘기, 학계에서 개념 정립이 안 됐다고 해서 개념 정립 미비를 사유로 이것을 피해 가는 것은 너무 궁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가축분뇨 처리 문제에 관한 대토론회도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의 위원님들도 많이 갔었고 관심 표명을 했었는데 어쨌든 가축분뇨 처리 문제 해결, 메탄 저감을 위해서 경축순환직불제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자원순환산업 생태계가 구축돼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공익적 가치를 생각할 때 직불제 확대에 맞물려 가지고 이것도 차제에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탄소중립직불에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축산 쪽에도 필요한 대책이니까요.

○**소위원장 이원택**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차관님 말씀 중에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8년 이상 자경 의무, 경작하면 양도세 면제하는 것까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면제하게 되는데 그것을 8년이 아니고 더 줄이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그런 것까지 검토를……

○**임미애 위원** 예, 줄이든지 이런 얘기 하셨는데 좀 신중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8년 경작이라는 그게, 그 제도를 악용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은순 씨 같은 경우에 이 제도를 악용해서 농지를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제가 반대로 생각을 해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농지를 파는 경우에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게 또한 이 조항이기도 합니다. 농사를 8년 이상 짓고 10년, 20년 지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농지를 팔아야 될 경우에 이 사람한테 양도소득세를 내라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제도는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측면은 있으나 이 제도의 원래 취지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였다라는 것을 차관님께서 인식하시고 그것을 좀 유연화할 때 이것은 신중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경우 농지에 대한 접근을 아주 풀어 놨더니 난리도 아닌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저희도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를 할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멸지역만 할 건지 그런 것은 앞으로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짧게……

○소위원장 이원택 예, 임호선 위원님 충분히 하십시오.

○임호선 위원 차관님, 지금 선택직접지불제도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임호선 위원 얼마나 증액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제 생각에 면적을 한 2만ha, 일단 그 정도로 늘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산 금액은……

○임호선 위원 금액으로 금년하고 비교했을 때 내년도에 증액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금액 제가 계산해서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예, 그것 한번 자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하여튼 증액을 했습니다. 면적도 늘렸고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제 5조까지 늘려 나가려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많이 늘려야 됩니다.

○임호선 위원 분야별로 이게 얼마나 느는지 그 추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13쪽에 보면, 존경하는 의원님이 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법안을 낸 까닭은 심의의 결까지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가 담긴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임호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예산도 없고 3년간 회의 실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예컨대 지금 탄소중립직불을 시범운영하면서도, 여기 보시면 심의위원회에 관련 부처 차관님들도 막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 시범운영할 때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정말 농림축산식품부가 타 부처를 핸들링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제가 이건데 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이렇게 시범운영 같은 것을, 시범사업을 탄소중립 같은 경우 그냥 하면 타 부처에서 아무래도 협조가 좀 덜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 회의를 활성화시켜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다음에 14쪽의 이것은 단순히 자구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행 36조를 보면 정보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의무조항으로 담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임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영에 있는 사항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법에다가 담는데 여기는 오히려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담는 게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이것은 제가 재정 당국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시스템하고 이것을

법에 이렇게 넣는 것을 제가 아직 의견을 안 물어봤기 때문에.

○**임호선 위원** 아니, 15쪽을 보시면 20년도부터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기운영 중에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면 사실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게 결국 이 농림사업 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로 해도 제 생각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임호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보다…… 이게 지금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입법 취지로부터 좀 벗어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담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차관님이 동의해 주시면 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것은 제가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차관님,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명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유연성 차원에서 말씀하셨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탄소중립직접지불하고 전략작물직불은 그렇게 시행령에 넣겠다 이런 의견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리고 경축순환은 조금 더 탄소중립 쪽의 내용을 포함해서 가겠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나 명칭을 별도로 넣는 것은 약간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으로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또 하나, 차관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략작물직불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전략작물이 뭐냐? 사실 전략작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규정이 애매하다는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쌀·밀·콩은 이해하겠지만 나머지 작목이 전략작물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때도 이 명칭을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전 장관님께서 아마 이 명칭을 계속 고집하셨는데요. 그래서 생산조정직불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여기에 종류를 넣은 겁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시행령에 반영할 때 명칭을 한번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다음에 아까 심의냐 의결이냐, 그건 윤준병 위원님도 수용하고 저

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방금 임호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하여야 한다’ 팬창을 것 같은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지금 바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지금 이것이 확인이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방금 윤준병 위원님 손 드신 건가요?

윤준병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고.

○**윤준병 위원**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농촌의 가축분뇨 처리 문제도 그렇고 유기질 비료와 관련돼 있는 제도도 그렇고 우리가 말로는 경축순환제도를 도입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현장에서는 사실상 전혀 손을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탄소중립이라는 틀 속에다 집어넣고 경축순환농업을 포함하면 큰 그림으로는 포함된다고 그러는데 실제 해야 될 내용들을 전혀 지금도 이렇게 사실상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듯이 보이는데 말로는 표명하면서, 가야 될 방향이라고 그러면서 정작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토지의 영향 분석도 해야 되고 또 나오는 가축분뇨를 토대로 한 여러 가지 비료나 이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도 실제 성분이나 이게 정확하게 담겨서 이 내용이 이행이 되어야 되고 그려려면 실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동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법률에서 규정도 구체화돼 있지 않고 실제 동인을 부여할 수 있는 내용도 미흡하고 그러니까 원 오브 템(one of them)의,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고 가기에는 실제 우리 농정이 앞으로 농촌에서 이루어져야 될 시스템 내용에서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로는 하면서 현장에서는 별로 작동을 않더라. 그러려고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도화해서 그 내용을 명문으로 하고 그 내용이 명문화돼서 그 내용과 관련된 제도적인 뒷받침을 회의할 때마다 관련성을 가지고 뒷받침을 해 줘야 또 자원 배분도 실제 해 줘야 그게 현장에서 제대로 활성화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에서 그런 내용들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강조하니까요.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운영뿐만이 아니고 명문화를 해야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필지별로 흙토람이라고 하는 진홍청의 시스템에 지역마다 양분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토양의 산성화는 좀 심한 정도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축분뇨를 더 이상 불릴 데가 없어서 처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가축분뇨를 가지고 바이오차를 만들든 아니면 바이오가스를 만들든 이렇게 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 또 아니면, 그래도 안 되면 정화해서 방류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경축순환의 이름을 달든 탄소중립의 이름을 달든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차관님 얘기 들으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다 하고 있다고 들리는데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화해서 제도적으로도 명문화하고 그 내용을 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으로서 작용도 하고, 실제 하고 그걸 통해서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 기대를 하면서 참여할 수 있고 또 이쪽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동인을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뭔가 체계화되고 이런 내용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알겠습니다. 시행령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경축순환을 포함한 탄소중립하고 관련된 이렇게 직접적, 선택직불을 한다는 이런 식으로 내용을 추가로 더 넣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하여튼 또 시행령에다 넣으려고 그러면 시행령 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정확하게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제도적인 검토를 할 때 ‘시행령에다 하겠습니다’ 해 놓고 또 지나가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해 놓고 또 이후에 검토해 보면 하나도 진척된 게 없고 이러면 안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의견 수렴도 하고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리고 더더군다나 시행령에다가 위임해서 신축성 있는 장점도 있지만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제도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규제가 안 되다 보니까 생각나는 대로 해요. 자기가 원하면 시행령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하고 입법 취지에 배치되는 내용, 입법 취지에 담으려고 하고 있는 내용은 제대로 준수 안 하고 이런 내용들이 왕왕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잘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로 신뢰를 줬으면 좋겠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차관님, 혹시 답변 왔나요? 좀 시간이 걸리나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위원장님, 그러면 정리하는 동안 조문을 잠깐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예.

차관님, 아직 답변이 안 온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아, 가능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금주 위원님 뭐 질의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

○**문금주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안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공익직불금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건 바로 확인 가능할 것 같은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공익직불 전체는 올해 예산이 3조 1000억이고요. 내년에 3조 4000억으로 늘었고요. 선택직불은 2360억에서 3202억으로 증액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산 부분은 또 추가로 예산소위 가서 하면 되니까 거기서 또 점검해 보는 걸로 하겠고요.

방금 논의된 법안에 대한 조문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석전문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지금 자료의 3페이지에 보면 현행 3항이 있는데 차관께서 이 안을 ‘농림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이 안은 현행 1호·2호·3호를 넣고요. 그다음에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의 위원회 심의 의결과 관련해서 의결 기능은 제외를 하고 ‘심의한다’ 이렇게 하고요. 2항도 현행 유지입니다. 23조는 현행 유지이고.

그리고 10페이지의 4항에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5명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수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의 36조 1항에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하여 공익직접지불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15페이지 현행 5항에 ‘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 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2항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방금 조문을 말씀했는데,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아까 21조 2항하고 3항을 수석전문위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조금 더 문구를 저희가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아까 그 쟁점은 1·2·3호는 있는 거고 다만 수석께서는 ‘전략작물직불 등 대통령령’ 그건 시행령으로 둔다는 거고 그 안에 전략작물직불하고 탄소중립직불이 들어가고 탄소중립직불 안에는 또 경축순환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공감은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걸 조문을 만드는 건데 그걸 조문을 좀 성립시키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마지막에 ‘하여야 한다’ 그것도 성립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문을 지금 매듭을 지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임호선 위원** 이것 다음 것도 똑같은 법인데……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다음 것 심사하고 그 과정에 조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8번 심사자료입니다.

송옥주 의원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 소득 기준을 100분의 65로 규정하는 내용인데요.

3페이지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논의 필요입니다. 이 개정안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37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100분의 65 이상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2021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6000여만 원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지금 대상자가 확대되는데 이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예정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약 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평균 4000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표로 나와 있는데요. 현행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 변경에 따라 현행 3700만 원에서 4169만 원으로 됨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 내용은 현재 지금 대통령령에 3700만 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더 늘려 줬으면 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이건 법에서 정하기보다 대통령령으로 그대로 위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법에다 명시했을 경우에 예산이 반영이 되거나 안 되거나에 따라서 워낙 달라지니까 저희들이 예산 상황을 보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대통령령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 자리에 송옥주 의원님이 안 계시는데 아마 이것이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다, 금액이 조금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 그걸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율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전체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비율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상황이 변경됐기 때문에.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3700만 원,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3700만 원이 정해진 지가 언제 정해진 거지요, 3700만 원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2009년에 됐습니다.

○**윤준병 위원** 2009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윤준병 위원** 2009년에 3700?

○**문금주 위원** 2007년으로 돼 있어요.

○**소위원장 이원택** 2007년에 제정됐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2007년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요건을 정한 건 2009년으로 그렇게……

○**윤준병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거의 한 15년이 도과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동과 관련된 내용의 반영이 사실은 대통령령에다 위임해도 실제 한번 정해 놓으면 안 바꾼다, 그 한계가 있으니까 입법하자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전국 연평균 소득 100분의 65 하면 얼마예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2021년 기준으로 하면 4169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41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이 법안을 대통령령에다 위임해서 신축적으로 하고 시세를 잘 반영하고 예산 당국하고 협의해서 한 번 정해지면 깎지는 못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운영하자고 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맞지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대로 해 주면 부처에서 제대로 그 취지에 맞게끔 안 움직이니까 입법하자고 그러는 거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게, 3700만 원으로 정한 게 2009년이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물가상승이나 이런 걸 따지면 기준을 더 올려 가지고 대상자를 더 줄이라고 많이 요구를 기재부가 됐든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안 올리고 그래도 대상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이 좀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 내용이 아닌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더 줄이려고, 기재부 입장에서는 대상자를 더 줄이고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할 건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주기로 하려고 계속 그래도, 그걸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윤준병 위원** 아니, 기재부가 그러면 금액을 더 낮추자고 그랬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지요.

○**윤준병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줄이지 않으려고 계속……

○**윤준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소득 수준이 지금 경제성장하면서 물가인상률이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면 훨씬 늘었을 테니까 그 기준으로 정하면 받을 수 있는 지금 대상자가 늘 텐데 지금 그대로 하다 보니까 안 는다는 거잖아요, 수혜 대상자가.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한 4000여 명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행정청에서 그 역할들을 제대로 안 해서 그만큼 늘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켰다는 방증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이 내용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시행령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맡겨주면 해소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다음 시행령을 바꿔 가지고 보완하겠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렇게 원래 입법 취지에 맞게끔 시행령에다 위임해서 행정의 신축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알아서 잘해 주도록, 전문성이 필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하도록 맡기는데 안 하니까 이러는 거니까.

최소한도 그 내용을 여기에 맡겨 주세요 이렇게 하려면 그런 내용들을 점검해 가지고 그대로 맡겨 주셔도 이 정도를 앞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 줘야 이 내용을 발의하신 분이 수용을 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가 어쨌든 직불제 기본계획을 만들 거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기본계획 발표할 때 이 내용은 담아서 발표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어떻게 할지 저희들이 보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조까지 늘리기로 했으니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대상을 늘려 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더 힘든 사람한테 더 많이 주고 위에는 조금 줄이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는 농업인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해 보고 기본계획 만들 때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차관님, 직불금 지금 5조 원 늘린다고 얘기하는 게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3조 4000억? 다 합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내년에 3조……

○**윤준병 위원** 아니, 다 합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지금 3조 1000억.

○**윤준병 위원** 3조 1000억. 그다음에 내용 보면 4000억 늘리는 것 같은데, 늘어나는 게 전체적으로. 원래 5조 원이 되려면 말이지요 매년 7000억씩 늘어야 5조 원이 돼요. 그런데 2년 동안도 한 4000억, 매년 한 5000억씩 늘렸고 지금도 한 4000억 늘리면, 늘어나는 내용 대비해서 근 5000억, 6000억이 지금 안 늘었어요. 그러면 뭐 임기 끝날 즈음에 한다고 발표만 하고 끝날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로드맵 가져오라 그래도 안 가져오고 기본계획 수립도 원래 시작했을 때 바로 해 가지고 수립해서 용역해 가지고 지금 이미 나왔어야 될 기본계획도 이제 용역하고 있다 그러고. 그러면서 말로만 5조 원 약속했다고 얘기만 하고 다녀요. 누가 믿겠어요.

그리면서 그것을 실제 제대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줘야지 하는 행태상으로 보면 전혀 가능성은 없는데 말로만 5조 원, 5조 원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자금 가지고, 저는 욕심상 정부가 5조 원을 재정 당국에서 늘릴 용의가 있으면 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하는 데 1조 원도 안 들어요, 그건 선택적이니까. 선제적 생산 조정하면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2000억이면 되잖아요. 오히려 그걸 제대로 과감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드는데 그건 다른 문제니까.

그래서 직불금과 관련된 내용 했을 때 신뢰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 작업할 때도 그 문제가 나오겠지만 가시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저도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2년간 1조 원을 일단 직불금을 늘렸습니다. 저희 출범할 때 2조 4000억에서 지금 3조 4000억까지 가니까 1조 원이 늘어났고요. 하여튼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사실은 작년에 농업인의 날 그래서 대통령님 입에서 5조 원 하겠다는 말씀이 나오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차관님, 이 법안은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까 기본계획을 짜신다 그랬지요? 이게 언제쯤 나올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원래 기본계획이니까, 25년부터 29년까지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만들어야 되고요. 그걸 국회에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이 법안은 차관님께서 지금 송옥주 의원의 취지나 내용은 현실화하자는 거니까 그걸 최대한 반영한 기본계획이 연말 정도에 나올 거다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농업인들 의견도 저희들이 듣고 해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이 법안은 한 12월 정도 가서 그때 기본계획을 놓고 다시 계속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차관님, 이게 오래전 설정된 기준이라서 아마 자료가 없으실 것 같은데 2007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다는 말씀 아까 계셨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2009년도에 3700만 원으로 설정했다고 하는데 3700만 원으로 당시에 설정한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자료를 한번 찾아서 주시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때 이 3700으로 설정한 기준이 지금 시점에서 예컨대 예를 들면 400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다든지 지금 가구 연평균 소득의 100분의 65가 아닌 이 기준 자체를 인상할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까지 한번 자료를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마지막 넘기려고 그랬더니……

○**임미애 위원** 짧게……

○**소위원장 이원택** 예, 임미애 위원님.

○**문금주 위원** 차관님, 저 문금주입니다.

한 가지만……

○**임미애 위원** 제가 잠깐만……

○**소위원장 이원택** 임미애 위원님 먼저 손 드셨어요.

○**임미애 위원** 이게 농사짓고 사는데 그래도 4000만 원이 넘으면 직불금 안 받는 거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농촌 현장에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부부가 부인은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요. 한 50대 초반 독립돼 있고 남편이 내려와서 농사를 짓고 싶어 해요. 이렇게 따로 가계가 독립돼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농업 소득으로 먹고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둘이 부부라는 이유로 소득이 합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농사를 짓는 남편의 경우 직불금 대상자가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요즘 농촌 지역에 부부가 떨어져서 한 사람은 내려와서 농사짓고 이러는 사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지적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이 동시에 같이 살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한 가지만…… 지금 발의해 주신 의원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차관님은 어찌 됐든 이런 개정안 취지를 반영해서 기본계획에 최대한 담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송옥주 의원님은 정액으로 나온 3700만 원을 100분의 65에서 정률로 바꾸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동의하셔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게 지금 정률로 바꾸는 게 나을지 아니면 금액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그렇게 하는 게 나을지 그것까지 한번 저희들이 농업인단체의 의견도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한번 판단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어떻든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한 측면을 고려하고 또 아까 임미애 위원이 말했던 농업·농촌의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서 기본계획을 반영

할 때 좀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때 가서 또 계속 심사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알고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참 아까 그 조문 아직 안 됐어요?

아까 조문이 좀 협의가 안 된 것 같네요. 제가 된 줄 알았더니.

그러면 다른 법안을 먼저 또 심사하고 조문이 완료되면 의결해 가겠습니다.

3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6)

3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1)

3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2)

3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4)

3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1)

(15시21분)

○**소위원장 이원택**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5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소위 심사자료 9번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9번, 2페이지입니다.

총 6건이 회부돼 있는데요, 오늘은 5건 논의하시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5건의 개정안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계획수립 주기 또는 포함사항, 국회 보고, 5번 심의사항, 7번 심의회 구성 변경, 10번 보상대책 마련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5번의 손해평가 이의 신청, 19번의 신규 보험상품 개발은 수용 의견입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어업재해 정의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원택 의원안은 농어업재해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로, 여기구 의원안은 일조량 부족을 추가하고 있는데 저희 검토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원택 의원안과 관련해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정의를 인용할 경우 질병 또는 화재가 제외되고 일조량 부족 같은 경우 그 범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또는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인데 저희 검토의견은 수정 필요입니다.

기본계획은 다른 입법례를 보면 5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년 유지를 하되 기본계획 변경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수정의견처럼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같다. 일반적인 입법례를 따랐습니다.

8페이지, 기본계획 포함 사항으로 박수현 의원안은 임산물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거나 이원택 의원님 안은 재해보험의 대상이 아닌 품목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 의견은 이원택 의원안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호의 품목, 대상 지역 및 상품 개발로 추가를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박수현 의원안은 기본계획 포함사항에 산림청장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관 내부 검토사항을 고려해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국회 상임위 보고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 5년의 입법례가 나와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심의회 심의사항에 보험료율 산정방법을 추가하거나 이에 따른 보험료율 산정인데 손해평가 방법에 농어업재해에 따른 피해율 부분은 수용이 가능하고 보험료율 산정 부분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보험료율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수리된 경우에 확정되고, 뒷 페이지에 보시면 좀 전문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 구성 기준을 3분의 1 이상 농업인의 의견을 대변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 검토의견은 수정 필요 의견입니다.

위원 수가 21명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 수를 늘릴 경우 타 분야가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7항에 ‘농업인, 농림축산업인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수정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보험목적물 재검토 연례화인데 두 의원님 안은 매년 연례적인 재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논의 필요입니다.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심의회 의결을 통한 보상범위 결정 등의 내용인데 저희 검토의견은 신중검토입니다.

심의회 결과에 따를 경우 재해 범위의 변동성이 커지고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 보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법체계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보험가입자에 대한 교육 의무인데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해서 28조를 수정하는 결로 하고 교육 이수자 보험료 감면은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21페이지의 28조에 ‘교육·홍보를 하여야 하고’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22페이지의 보험사업자의가입자 확대 노력 의무 및 보험상품 안내 의무인데 이 부분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미 가입자 확대 노력 의무와 관련해서는 현행 계획 또는…… 이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험상품 안내도 금소법에서 강력한 제재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9번, 보험사업자의 보험료율의 부당 상승 방지 노력인데 저희 검토 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또한 현재 보험료율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이후에 수리된 경우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군 등을 동일한 재해위험도를 갖는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 등 기본요율 인상으로 인한 개별 농가의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이원택 의원께서 손해평가인의 정기교육 내용에 첫 번째로 대상품목의 품종, 수량, 재배방식을 포함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수량 자체는 교육 대상으로 삼기 모호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포함할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농식품부장관 등의 수행업무에 손해평가인력의 전문성 제고 포함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손해평가사는 3500여 명, 손해사정사는 420명, 손해평가인은 750명 정도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손해평가 결과 이의신청 시 보험가입자의 손해평가사 교체 요구 수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 저희 검토의견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년 재평가 요구 건수가 1000건 이상으로 개정안을 따를 경우 공정한 손해평가가 담보되는데 다만 그 대상을 손해평가사 외에 손해평가인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의무 지원 비율을 명문화하는 내용인데 서삼석 의원안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표에 보시면 정부가 70% 또는 80% 이상, 지자체는 20% 또는 10% 이상으로 의무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가입자 전반에 대한 보험료 부담 경감이 크지 않고 타 정책보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의 정부의 보험료 지원 추가인데요, 13번 항목입니다.

이원택 의원안은 행정구역 및 권역 단위의 누적 손해액 경감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 보험료율 산정의 기본원칙과 부합하지 않고 타 지역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5페이지의 신규 보험상품 개발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오른쪽의 시범사업 단계 도표를

보면 도입 외에 개발도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먼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같습니다.

이것을 재해대책법을 인용해서 하는 걸로 하게 되면 오히려 범위가 더 좁아지니까 농가한테 손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유지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지금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 것을 2년, 3년 이렇게 해 주셨는데 2년, 3년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5년으로 기본계획은 놔두되 중간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 수시로 변경시킬 수 있도록 그 변경 근거를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의 이것도 수석전문위원 말씀해 주신 것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임산물 등을 고려해서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거는 보험하고 조금 맞지 않는, 그래서 임산물 때문에 농산물을 더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원택 의원님 해 주신 것 3의2의 재해보험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은 이거는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이니까 3호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호에다가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이라고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9페이지는 박수현 의원안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이거는 산림청장은 사실 농식품부 내부 외청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어서 법에 따라서 정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얘기고요.

6항의 국회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변경이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 의견하고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는 손해평가 방법에 피해율과 보험료율 산정 그렇게 돼 있는데 보험료율 산정의 경우에는 원래 보험사업자가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보험업법의 원칙이고 농작물재해보험도 보험법을 적용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충돌되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고, 대신에 피해율의 산정은 저희들이 포함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보험료율 산정 관련해서 심의회에서 심의한 산정방식에 따라서라고 이원택 의원님이 넣어 주셨는데 보험료율 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이 있어서 그걸 벗어나는 내용이어서 또 심의회가 이를 의결하는 기구는 아니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재해보험심의회의 농업인대표, 사실은 피보험자가 될 텐데 그 이해관계자가 다수 참여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위원님 취지는 사실은 농업인들의 의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의견대로 7항에다가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게 사실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의 보험목적물 재검토를 매년 하자는 의견이신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매년이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2항을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이렇게 대안으로 다시 넣으면 이게 더 모양상으로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 미가입 농어가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 기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법에서 논의할 내용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 종류별로 해서 수정의견 주셨는데 협행 조항 그대로 가 주셨으면 좋겠고, 심의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도 좀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고.

19페이지에 있는 보험상품 미출시로 인해 가지고 하는 그 피해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는 사실 이거는 재해대책법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다, 이거는 재해보험하고 관련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조항은 이것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7조의2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28조에 넣어 가지고 교육·홍보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만들어서 넣으면 위원님이 제기하신 취지가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보험사업자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 이것은 사실은 보험사업자는 당연히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 이렇게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사업자가 상품 안내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여기에서 처벌 규정을 두는 건 좀 적절치가 않은데 이것보다 오히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설명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적용받으니까 굳이 여기에 안 넣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보험료율의 부당 상승 방지 노력 의무화를 이렇게 넣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는 시군 단위로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 읍면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를 부당하다고 하게 되면, 사실 보험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사실 이것보다 대안을 제기를 한다면 이게 구분 단위를 광역으로 함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손해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단위를 더 세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여야 한다 또는 보험사업자가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으로 넣어주시면 그게 더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적용하는 데는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여기 손해평가의 5항 개정안에 해 주신 게 ‘대상 품목의 품종, 수량, 재배방식 등의 내용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교육 실시하는 거는 괜찮은데 수량을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를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필요한 내용으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 25조의2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수석전문위원 의견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얘기해 주신 대로 교체를 요구했을 때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애초에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으로 다시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 이렇게 문구만 조금 조정하면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보험료에 대한 보조비율을 법에 명시를 해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현재 50%를 하고 있고 지자체가 30%를 하고 있는데 높여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거는 재정 부담의 문제도 일부 있고요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조율을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를 법에다 명시하는 것은 보조금법하고 충돌도 있고 사실은 예산에서 충분히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보험료 지원항목 산정의 근거가 되는 행정구역, 권역 단위의 누적 손해액 경감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보다는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산정 단위를 지금 시군으로 하고 있는 걸 읍면까지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세분화해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여야 한다 그 조항을 앞에다 넣어 주시면 그게 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적용하기가 조금 더 유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35페이지의 이거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윤준병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이원택**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차관님,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사실 운영하는 과정에 농민들이 느끼는 제일 불만이 재해라고 그러면서 누적 손해액 보험료 할증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재해라고 인정이 됐으면 그 재해 인정된 만큼 연대해서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재해가 자주 발생하면 자기 책임도 아닌데 할증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내용이 소위 24쪽 이하 지금 보험료율 산정과 관련된 문제 제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줄래 하는 내용, 대안을 주셔야지 신중검토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하는 것, 이거는 제대로 된 대응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 비율 예산에서 책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예산에서 제대로 책정해 주면 그리고 농민들이 원하는 실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면 굳이 이런 내용을 제도화하자 이런 얘기를 않지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법에 명문화해서 예산이 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그걸 통해서 농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고자 하는 충정에서 넣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 예를 들면 정부가 현재 50% 부담하는 것 60%로 늘리겠다든지 또 이와 관련해서 지역 농협들 부담하고 있는 내용들 또 다른 영역에서 있는 것 이 부분은 중앙회하고 해서 어떻게 분담한다든지 그리고 재해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여 줄 건지 이 내용을 좀 담아 주셔야지.

물론 원칙대로 하면 예산에서 반영하고, 제도가 있으니까 예산에서 반영하는 대로 맡기면 좋은데 아시는 것처럼 예산에서 안 해 주잖아요. 기재부가 그거 넉넉하게 해 줍니까? 그러면 제도화해서 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의무화를 하고 그걸 법정 의무사항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부담을 좀 줄여 주자라는 취지니까 그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 취지가 살아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답변……

○**소위원장 이원택** 예,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게 사실 재해보험이 보험료의 90%를 보조로, 정부가 50, 지자체가 한 30 그다음에 농협이 한 10% 정도 이렇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90%의 보조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예산이 충분하고 해서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당국 입장이나 다른 데서는 이것도 사실은 과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지금 벼텨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보험료의 90%를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같은 지역 안에서도 어떤 농가는 스스로 방풍림도 만들고 이렇게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도 해 가지고 그래도 피해를 자기들이 스스로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3년 연속 재해를 입어서 피해를 입고 보험금을 받고 이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험의 이런 어떤 안정성……

만약에 이게 손해율이, 지금도 사실은 누적 손해율은 적자라고 나옵니다만 이게 심해지게 되면 보험 사업자들이 보험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 나오고 저희가 당초에 보험을 시작할 때도 그랬고 농협이 아닌 다른 민간 보험사까지 끌어들여서 같이해 보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또 안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농협도 소극적인 게 자기들도 손해가 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여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한계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첨언만 좀 할게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해 주세요.

○**윤준병 위원** 지금 이 설계 자체가 재해 대책하고 재해보험하고, 재해 발생하면 모든 내용을 보험법에다 위임해 놓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안전망을 정부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고 선택적인 안전망을 재해보험으로, 정책보험으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데 모든 거를 다 보험에다 넣어 놓고, 기본 안전망과 관련된 내용을 보험에다 넣어 놓고 처리

하니까, 그것도 정책보험으로 하니까 그런 실제 미스매치가 생기는 것이니 만큼, 뒤에 또 재해대책법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취지가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에서 열개가 조화롭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구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저는 다른 건 아니고 박수현 의원안의 임산물에 대한 포함 여부인데요. 아까 말씀 중에 ‘상품 개발 사항으로 이것을 포함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들은 게 맞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아닙니다. 그 조항이 아마 임산물 등을 고려해서 형평성 있게 상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실제로 임산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들어가려 그러면 그 품목의 통계자료가 수집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가입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게 돼야 되는데 임산물이 없기 때문에 임산물을 형평성 차원에서 넣어야 된다,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여건이 안 됐으면 못 넣는 것이고.

그다음에 농산물도 있고 임산물도 있는데 농산물은 추가로 넣어야 되겠는데 형평성상 임산물을 먼저 해야 되니까 농산물을 넣지 마라 그건 아닐 건데 이렇게 해석이 돼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표현은 법에 안 들어가도 저희가 임산물은 여건이 되고 그러면 필요한 건 저희들이 넣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임미애 위원** 실제로 산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는 벼섯이나, 일종의 산나물 같은 것 고사리나 이런 걸 직접적으로 재배를 하는 면적들이 좀 넓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차관께서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로 정부가 이 산업과 관련된 기초자료들을 이렇게 수집한다든가 이래 본 적이 없어서 농가 입장에서는 임산물에 대해 보험 대상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사실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이후에 여기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들을 지금부터 꾸준히 시행하셔야 되는 건데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설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임산물이 현재 8종이 재해보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품목은 다 들어와 있다고 보이는데요. 뼛은감, 밤, 대추, 복분자, 표고버섯, 오미자, 호두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두릅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파악되는 대로 가능한 데까지 추가로 더 늘려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지금 손 든 순서가 있어서요.

문금주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차관님, 농업 재해가 우리 농민들 잘못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재해가 농민들 잘못이라기보다 농업인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농업인이 있을 거고 그런 노력을

안 한 농업인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게 사례가 많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례는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자기가 애써 이렇게 농사를 하는 경우 과연 재해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쉽게 나타날까요? 저는 그게 의문인데, 이걸 기본적으로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계속 이렇게 해 버리니까, 지역에서는 지금 할증 때문에 제일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번에 우리 당론으로 재해법하고 재해보험법을 추진한다 하니 지금 지역에서는 상당히 기대감이 좀 있어요. 뭔가는 좀 조정이 될 걸로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뭔가 대안을 주십시오, 할증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가 어제께 농민단체하고도 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재해에 관한 것이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들의 수입안정보험까지 확대를 하겠다. 지금은 재해로 인한 생산량의 리스크만 커버하고 있는 건데 가격 변동의 리스크도 일부 저희들이 흡수를 해 가지고 하는 농업수입보험까지 확장을 해서 하겠다. 그렇게 되면 농가에 지원하는 것도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문금주 위원** 기본적으로 아무리 보험 체계가 잘 돼 있어도 그거를 회피하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은 일반 보험에서도 다 나타나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런데 농업재해보험법에 그걸 똑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은 너무 좀 일방적이지 않나, 너무 이렇게 일반화해 가지고 하는 거다.

그래서 농업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좀 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후위기가 우리 전체적인 인간이 잘못해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기후위기가 발생이 된 건데 그걸 농어민들한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다고 보는 거고 뭔가 국가 책임을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 그게 할증도 국가가 좀 더 책임을 져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험에서 그렇게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 것은 사실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험제도를 설계할 때 당연히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두는 게……

○**문금주 위원** 그런데 그런 사고하고 이 농업 재해는,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은 다르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래서 일반적으로 할증하고 할인제도를 두는데 일반 보험에서 할증·할인은 저희가 적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해보험에서 할증·할인은, 할증하는 건 사실 일반 보험보다 훨씬 약하게 지금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할인제도도 저희들이 적용을 해 가지고 노력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더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문금주 위원** 예를 들면 올해 재해를 당했어요. 내년에 또 재해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요즘에 비일비재하고. 그러면 그 1년 사이에 얼마나 자기가 재해를 입을 걸

감안해서 대비를 하고 하겠냐 이거지요. 거기에 또 준비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거를 단순하게 작년에 입었으니까 올해 또 입으면 할증을 한다 이게 저는 안 맞다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들이 불가피한 그런 사정들은 할증이나 할인 적용할 때 적용을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발생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말씀하신 대로 적용할 때 저희들이 조금 탄력적으로 그렇게 해 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금주 위원** 그거를 뭔가 이렇게 좀 드러날 수 있는, 뭐랄까 문서화가 되든지 어쩌든지 지침상에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걸 저희들이 법으로 그렇게 넣기는 좀 그렇고요.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용해야 될 사항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저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 23페이지요.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52%예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김선교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농가들이 적게 보험에 가입을 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렇습니다. 규모가 큰 농가들이 많은 품목, 예를 들면 양돈이라든지 아니면 사과나 배라든지 이런 거는 구십몇 %씩 가입을 했는데 작은 품목 또 소농이 많은 품목 이런 데는……

사실 상추 같은 경우는 여름에 20일 키우면 되는데 20일 해 가지고 재해가 안 나면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20일 키워 가지고 재해를 입으면 재해보험에 가입 안 해도 우리가 대파대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비용이 굳이 안 들어가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보험에 가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품목별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지금 그러면 금융기관, 우리 대다수가 농협을 활용하잖아요. 다른 보험 회사는 들어가는 데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없습니다.

○**김선교 위원** 없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김선교 위원** 홍보가 좀 저조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홍보 문제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김선교 위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재해보험 들어가고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것을 좀 범제화시킬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지 않으면, 매년 한 3~4%씩 올라가고 이게 언제, 어느 천년에……

지금 존경하는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정부에서 80%, 52%면 지원 다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가입 농가들……

○**김선교 위원** 그럼요.

예산을 100을 기준으로 봐서 편성할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게 편성하지는 않고요. 가입률하고 품목하고 이런 것 따져 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선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52%니까 이런 부분에 잘 고려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아주 의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자자체를 활용해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재해에 대한 보험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법안에 그런 것도 한번 넣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래서 그 조항에 아마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 넣도록, 의무적으로 하는 조항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김선교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것을 의무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다음에 임호선 위원님 아까 손 들었고요. 그다음에 박덕흠…… 아니, 문대림 위원님이 먼저 하셨지요?

○**문대림 위원** 아까 그 전에도 손 들어도 안 보시고, 친해서 그런 건지 안 친해서 그런 건지……

○**소위원장 이원택** 죄송합니다,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손은 임호선 위원이 먼저 들었는데 여당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하고, 임호선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임호선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하고 비슷한 지적인데요. 이 가입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홍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가입조건에 관한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파종기간이 안 끝났는데 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요. 마늘의 경우에 그렇고.

그리고 최근 당근의 예인데 이게 발아율 50% 이상 되어야 가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문대림 위원** 가뭄·폭염, 재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문대림 위원** 분명히 파종은 이루어졌는데 가뭄, 폭염에 의해서 발아가 안 되거든요. 재해로 인해서 발아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가입조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농협 손보나 농림부에서는 거기에서 유통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박, 땅콩 같은 경우 생산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작목의 다양화를 얘기하면서 생산량에 따라 가지고 또는 생산농가의 숫자에 따라 가지고 보험 가입이 차단돼 있는 이런 경우들은 조금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가입조건과 관련해서 손해사정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현장에서 보면 품목에 대한 이해도, 농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물론 상당한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문제들이,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 특히 가입조건과 관련해서는 품목별로 면밀한

접근, 그에 따른 약관의 변경까지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품목별로 조건이 좀 다르고 그래 가지고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형평성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것들 잘 조화되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당근의 예를 들지 않습니까. 가뭄·폭염, 자연재해지 않습니까. 빨아율이 평균 70%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평균 20%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50%가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입조건이 빨아율 50%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자체를 못 하는 겁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게 명확한데 보험 가입 자체가 차단됐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제 장관님은 시원한 말씀을 안 주시던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최근에 비가 오고 조금 더 나아졌다고는 들었는데요. 이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저 먼저 해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박덕흠 위원** 차관님, 문금주 위원님이 아까 할증 부분의 보험 얘기했는데 선택적, 상황을 보고서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보험 산정하는 분들이 현장에 나오잖아요. 나오면 거기는 갑이 돼 가지고 제가 면접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국회의원이 가서 현장에서 불러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본인들의 특권으로 생각해서 그만큼 갑질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할증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그게 내가 볼 때는 거의 99.9%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할증……

왜냐하면 이게 사실 내가 뭐 보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해로 인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할증제도는 조금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도 농민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할증제도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늘이 이렇게 해서 재해를 입었는데 할증을 하니까 또 손해를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시행령이든 뭐든……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과실이 없을 때, 정말 천재지변으로 인했을 때는 할증을 안 한다든가 이것을 좀 강제적 조항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저희 지역이 이번에도 재해가 많이 났잖아요. 그러면 비닐하우스를 이중으로 튼튼하게 했더라고요. 튼튼하게 해서, 왜냐하면 눈이나 태풍이 불어도 안 넘어지게 아주 견고하게 했어요. 했는데, 이중으로 하니까 바깥에만 보험이 되고 안에는 또 보험이 안 된대, 같은 비닐하우스인데도. 뭐 농작물은 또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말이 좀 안 되지 않냐, 오히려 그분들은 튼튼하게 지어 가지고 태풍 불거나 눈이 왔을 때도 안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중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에서 잘못된 것은 그 안에 보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외부·내부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의 비닐하우스 동이면 하나로 묶어 줘서 보상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할증 부분,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할증 관련되는 것은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다 보지를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할증을 하고 있는데 할증을 조금 완화시킨다 그러면 무슨 다른 조건을 붙여 가지고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저는 짧게……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임호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부여를 갔는데 시설하우스에서 오이가 아니라 노각을 재배해서 피해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오이는 재해보험 대상이 되는데 노각은 대상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이 보험 할증 문제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개인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과연 할증이나 할인이 개인에게 가는 게 맞느냐, 오히려 지역이나 국가나 이런 자연재해에 대비를 해야 되는 책임은…… 이게 도덕적 해이, 뭐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이나 이런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개인의 과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보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약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할증을 한다면 지자체나 국가 책임으로, 지자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특정 시장·군수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똑같은 아니면 유사한 자연재해가 닥쳤는데 왜 그간 여러 가지 대비가 소홀해 가지고 다른 시군보다 큰 피해가 났느냐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이, 농민이 할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책임을 감당해야 될 봇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존경하는 차관님한테 할인·할증이 과연 개인에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자체 책임이나 국가 책임으로 감당하는 게 맞는지 하는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이 부분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체 요구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조사원, 손해평가사 교체 요구.

○**임호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이게 그냥 무작정 계속 교체 요구가 들어간다면 저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회,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해야지 계속 교체 요구가 된다면 도저히 이분들은 일을 못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맞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품목 확대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할 거고요. 아까 할증은 제가 좀 더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교체 요구를 해서 교체해서 심사를 하고 나면 만약에 거기에도 불복을 하게 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나중에 소송까지 갈 수 있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절차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저희가 더 보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교체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경우를,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차관님, 저도 조금……

이 재해보험법에서 제기하는 최고의 핵심은 할증에 있습니다, 사실. 피해율 산정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재해보험법에 품목이 다 있잖아요. 품목별 유형이 저는 다 다르다고 봅니다. 벼 같은 경우에 태풍이나 이상기후, 잦은 비가 왔다든가 태풍이 왔다든가 이런 부분은 농민들한테 어떤 의무를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아마 실제로 농민들한테 어떤 의무를 주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73개 품목인가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73개 품목이지요? 이 품목별로 할증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도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73개 품목별로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든다면 사과다, 낙과가 있다 그러면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낙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으면 거기에 방풍림을 설치한다든가 바람막이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의무 부여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 의무를 실행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할증을 할 수도 있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할인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렇지요. 할인을 해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되는데 품목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유형 자체가.

또 개인 농가가 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침수 같은 것은 개인 농가가 어떻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다음에 질병에 대해서도 방제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지금 기술력으로 방제가 가능한 영역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영역이 있고 또 이상기후에 따라서 다른 영역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 부여를 좀 해서, 농가의 어떤 도덕적인 해이에 대해서 뭔가가 있다면 각 상품별로 농가들이 해야 할 의무조치들…… 예를 들면 재해가 발생해서 이번에 받았단 말이지요. 받았는데, 그러면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다음 해에 농민들한테, 농가한테 줘야

할 의무조치들을 다음에 계약할 때 농가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의무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부분까지 맡기면 안 되지요.

그리고 73개 품목에 대해서 품종이 다르고 농법이 다르고 영향을 받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73개 품목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걸어내 줘야지, 불가항력적인데 계속 피해율을 더 높게 산정해 버리면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아까 차관님께서 점검을 해 보신다고 하니까 품목별로 그 원인 분석을 하고 농가에 부여할 의무가 무엇인지…… 예를 든다면 보험료 지급하면서 의무 부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리고 다음 보험 가입했을 때 그 의무 이행 정도도 따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농가가 할 수 있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를 잘……

그래서 사실 이 재해대책법의 핵심적인 게 이 부분이라는 거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접근이 된다면 나머지는 넣고 빼고 조정하고 이렇게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제가 하나…… 좀 검토하셔서 의견을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면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일단 아마 할증제도를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니까요. 언제까지 가능할까……

○**윤준병 위원** 2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소위원장 이원택** 한 달? 두 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일단 한 달 정도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되면 되는 대로 하고 또 추가로 더 할 것은 더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러면 한 달 후에 1차로 좀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사안이기 때문에 그 품목별로 저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기 전에 이 법안은 심사를 일단 좀 마무리 짓고요. 아까 그 조문이 지금 마무리됐다니까 그것 의결하고 10분 쉬었다가 계속 이어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차관께서 검토하신다고 그러니까 검토 잘 하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윤준병 위원** 대신에 기본은 그것 아니겠어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법적으로 준수해야 될 의무가 부과돼 있는데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폐널티는 부과되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폐널티 부과할 의무 부과는 안 해요, 통상. 농민이 법적으로 의무로 부과돼서 이행해야 될 내용이 거의 없다고요, 통상의 경우에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방풍림이니 뭐니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은 사실은 법적인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노력한 결과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윤준병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다른 분들도 참여하도록 만들어내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지금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설계가 그렇지 않다고 다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윤준병 위원** 그래서 실제 국민들의 눈높이나 정서에 맞게끔 실제 할증·할인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다 해서 그런 내용이 담보될 수 있도록, 운용도 돼야 되지만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내용을 어떻게 담는 것이 그렇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보완을 좀 해 줬으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전체 보험료가 안 올라가야 되니까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전체 보험료가 안 올라가야 된다 하는 내용은 한편에서는 보험과 관련된 내용…… 이게 정책보험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윤준병 위원** 정책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내용으로 운용할 의지가 얼마만큼, 감내해서 이것을 운용할 용의가 있느냐 그게 더 큰 것이지 개인적인 보험료 10% 내는데 농민들한테 보험료 안 올린다는 미명하에 90%에 해당되는 내용 부담 않겠다 그러면 그것은 용인을 안 하지요.

그리니까 농민들 부담을 안 늘리도록 하면서 그런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만들고 제대로 설계해서 정부가 그 부분을 감내해야 된다면 감내해야지요. 그래야 이게 재해보험으로서의 의미가 제대로 사는 것이지 그것을 다른 정책보험이라 하면서 자기 부담을 안 하려고 그러면서 자꾸 하면 인색해져 가지고 안 담기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위원님 말씀 주지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차관님, 재정을 걱정하는 인식이야 저희들도 다 알지만 그 73개 품목을 분석하시면서 73개 품목을 다 동시에 시행한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아까 할인이나 할증제도 관련해서……

○**김선교 위원** 보험은 안 받아 준다며……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시행은 한다고 안 해도 생각하고요. 이것을 단계적으로 3단계로 나눠서 시행할 수도 있고 또 재정을, 아까 총액 대비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도 좀 따져 보시고 또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은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재해보험과 관련된 심사는 여기까지 종료를 하겠고요.

차관님께서 한 달 정도 연구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10월 정도에 가서 다시 한번 재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해보험법 심사는 이렇게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조문과 관련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서요 별지로 위원님들 앞에 배포가 돼 있습니다.

21조, 23조, 24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21조, 23조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24조하고 36조가 있는데 24조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이 조금 있어서 수석전문위원 의견 듣고 논의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그러니까 23조는 현행이고요. 24조는 개정을 했는데요.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위원회 정비법 차원에서 이 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개정안을 일괄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하실지 아니면 이번에 24조를 먼저 개정을 하실지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24조…… 정부위원회 비상설 개정안을 검토해 보니 비상설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4조를 먼저 이번에 개정하시고 나중에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윤준병 위원** 예, 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러니까 지금 비상설로 하고 위원회 정비할 때 그렇게……

○**윤준병 위원** 아니, 상설로 일단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정비할 때 논의하자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차관님, 이상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괜찮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조문에 뭐 다른……

차관님, 이상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괜찮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우리 위원님들 저도 봤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 위원** 그러면 이게 21조 1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1, 2, 3항이 다 합쳐지는 거지요.

○**정희용 위원** 1, 2, 3항을 다 합치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1, 2, 3항을 다 합쳐서 그러니까 현재 1항이 선택직불제를 시행할 수 있다, 그 근거를 만들고 2항에서 이것은 뭐 추가로 할 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다 묶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희용 위원** 그 동그라미 2는 빼는 거네, 그냥.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정희용 위원** 동그라미 2는 없는 거고. 경축순환 촉진 이것은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말은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정희용 위원** 학계에서 이론이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정립이 안 돼 있다 그러고 그걸은, 여기 검토보고서에 있던데……

○소위원장 이원택 지금 그것 때문에 의견 조율하다가 차관께서 수용……

○정희용 위원 그것은 그렇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가 묶어 가지고 같이 운용하면 되니까요 이것은 뭐……

○정희용 위원 문구를 조금 더 다듬어 보십시오. 이것 전체적으로 좀 어색한데. 제목은 선택직접지불제도고 내용에는 각 호에 선택은 또 없고 뭐…… 뒤에 가면 등을 위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또…… 여하튼 조금 더 다듬어 봐야 될 같아.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이게 현행 2항하고 3항을 섞어서 지금 이렇게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정희용 위원님 취지를 고려하면 2항은 그대로 두고 3항에 이제 그 현행에 지금 식량안보, 탄소중립 이 부분을 3항으로 하는 방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2항은 두 개를 섞어서 지금 해 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헷갈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항으로 해 가지고 3항에 식량안보, 탄소중립, 경축순환 촉진 이 용어를 넣어서 ‘등을 위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불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차관님, 어떻게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두 개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더라도 나누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조문안을 발표 안 해도 되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그러면 현행 3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식량안보,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불제를 시행할 수 있다.

○소위원장 이원택 괜찮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2항은 어떻게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2항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및 2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보고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시간이 경과해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4시 반에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원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3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1)
 - 3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5)
 - 3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9)
 - 3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1)
 - 4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4)
 - 4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2)
 - 4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1)
 - 4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2)
 - 4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4)

○소위원장 이원택 의사일정 36항부터 46항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기 전에 수석전문위원 설명 듣고 또 정부 측 동의 여부 듣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양당의 한 명 내지 두 분씩 발언 듣고 계속심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온라인법하고 푸드테크법 두 법안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이나 정부 동의 여부는 공청회 끝나고 그다음 법안 심사 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팬참으시겠지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까 미뤄 놓은 농안법하고 그다음에 회의소법과 관련해서는 상황을 봐서, 아까 정희용 위원이랑 5시까지 끝내자고 그랬는데 5시 반까지 한다면 수석전문위원 설명 듣고 정부 측 동의 여부 듣고 그다음에 양당에서 한두 명씩 발언하는 것까지 가능하면 가겠고요. 또 그게 시뮬리적으로 시간이 안 된다면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36항부터 44항입니다. 아까 46항이라고 그랬는데 44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0번 책자입니다. 총 14개 주제인데요.

2페이지입니다.

총 개정안은 저희 위원회에 10개가 회부됐는데 이번에는 9개 논의를 하시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3~4페이지에 있고요.

5페이지에 9개 개정안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정의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농업재해 유형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는 내용인데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한 지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2페이지 표를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 주체에 농림부장관과 해수부장관, 수립 목적에 생산력 향상과 생산비 보장, 수립 절차·주기, 내용이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시행계획 수립 주체를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인데,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인데 저희 검토의견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포함 사항에서 현행 체계에 생산비 보상 내용을 추가하거나, 두 번째로 경영 안정 지원 사항,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사항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은 재해대책의 내용과 지원 범위에 생산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고려하는 데 의의가 있는데 생산비 부분에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0페이지 주요 내용에 보면 생산비 보장 관련 사항도 있고 농업재해 피해 지원이 농경지와 시설물의 복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21페이지 보면 경영안정 관련 사항이 추가돼 있고, 22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7호에 친환경 농작물 병충해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로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 지원 사항도 포함하고 있는데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재해복구비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보험목적물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쪽의 6번에 재해대책 수립에 피해 최소화 관련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상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 및 보험목적물 정의 신설인데 이 개정안은 제3조 7호하고 제3조 8호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과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예방대책인데 저희 검토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 검토의견은 신중검토입니다. 이미 대통령령으로 농작물·가축 위주의 피해가 발생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보조 및 지원의 기준 및 범위 확대 관련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생산비 보장인데 이 취지는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지원하는 취지인데 현 재해대책 지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복구비 차액 지원인데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법 등도 차액 지원의 근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윤준병 의원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은 농어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41페이지의 인건비나 43페이지의 금리인하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다른 유사 입법례에도 금리인하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45페이지의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 고려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47페이지의 보험 미가입 농어가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도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보험 가입의 유인이 없어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49페이지에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치 내용인데 이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기존의 국가재정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피해보상 대책 마련인데 저희 검토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조속한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는 취지인데 생산량 손실에 대한 보상은 기존의 농업재해보험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3페이지에 심의위원회 구성인데 개정안은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나 어업인단체를 추가하는데, 54페이지에 보시면 검토의견은 수정입니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입니다.

재해 시 응급조치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인데 저희 검토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조문 구조나 현 체계상 개정 실익이 낮아 보이고 이미 현행법상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우선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내 주신 법안의 취지는 재해대책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을 현재 기준보다 대폭 높여서 재해로 인해서 입은 손실을 보상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반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손실 보상하고 관련되는 것은 재해보험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그 개념까지 가 버리면 재해보험하고 충돌이 될 수 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정부 전체적인 대책의 입장은 응급구호하고 복구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우리나라 재해대책에 관한 일반법이고 그 법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복구비를 지원하고 응급구호를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특별법 성격을 가지고 있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그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손실 보상까지 가게 되면 일반법하고 충돌 관계가 있다, 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어업재해대책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그것을 논의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해대책의 범위·방법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예를 들어서 농어업재해대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뭘 더 하게 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게 있다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거기까지 올리는 것은 법체계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조문별로 워낙 많아 가지고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생략을 할까요? 조문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소위원장 이원택** 일단 1차 심사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충론적인, 방금 차관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중요 핵심 사안에 대한 의견만 얘기를 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핵심 사안을 확대할 필요는 없고요, 주요 핵심 사안들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우선 7페이지의 지진하고 이상고온을 추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저온도 있고 일조량 부족도 있고 하지만, 그 조문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일조량 부족이나 이상저온 이런 것은 기상특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만 적용을 해 놓으면 조금 힘든 게 있어서, 지금 있는 태풍·강풍·조수 이런 것도 다 재해대책심의회를 거쳐서 하는 거니까 그 2개를 더 포함하되 ‘이러이런 것 등 5조 1항에 따른 재해대책심의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그렇게 바꿔 주면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2개도 포함이 되고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짧게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기본계획 수립하고 관련해서……

○**소위원장 이원택** 그것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핵심적인 것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총리가 수립하게 돼 있으니까 이것을 장관으로 내리는 것은 조금 안 맞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면 핵심적인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재해대책기금을 따로 이 법에 뒤 가지고 만들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재해가 났을 때 재해에 대한 대책에 돈을 쓰는 것은 농식품부에 있는 돈은 조금밖에 없으니까 이것으로 쓰고 부족한 돈은 다 예비비에서 가져다 씁니다. 그런데 이것 재해대책기금을 농식품부 소관으로 만들게 하게 되면 농식품부 예산에서 써야 됩니다, 기금에 농식품부 예산도 써야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농식품부 예산 실링이 정해져 있는 이런 현황에서 기금 목적으로 돈을 쓰게 되면 농어업인들한테 지원하게 될 돈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농어업인한테도 조금 더 손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두셔도 여기에서 만약에 하고자 하는 것들이 정리가 된다면 그 돈은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으니까 별도로 기금을 안 만드셔도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1차 토론이기 때문에 2차 토론 때 또 자세한 건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요.

핵심 쟁점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윤준병 위원님 손 드셨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윤준병 위원 차관께서 얘기한 내용이 재난 관리 일반법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하고, 이게 특별법인데 일반법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입법적으로 한계가 있다 우려를 표명했어요.

그런데 원래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위에 있는 게 특별법이에요. 그리고 일반법 내의…… 재난 관리 기본법 이쪽 범위나 취지에 꼭 따라야 된다, 이 범위 내 지원하는 범주 내에서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차관이 와서 그 우려를 표명해서 내가 재난안전법과 관련된 내용 죽 봤는데 그런 취지는 없다. 그래서 그 목적이나 취지는 재난이 발생하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지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것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 입법적인 해석은 범위를 벗어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재해대책법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이, 물론 복구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볼 거냐 여러 가지 해석의 내용은 있는데 우리가 최소한도 조금 전향적으로 해석을 해서 실제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이 재기가 가능한 수준의, 최소한 자기가 투입한 비용 정도는 재난으로 인해서…… 그동안 투입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보전을 해서 거기에 기대하는 소득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담보를 해 줘야 된다. 지금 들어 있는 대파대나 이런 정도 수준 가지고는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정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그냥 막연히 정부가 임의대로 수립하는 내용이 재해대책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 재해대책은 최소한도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내용의 대책이어야 그게 재해대책이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런 내용들은 이 법에서 담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반법과 특별법이라고 하는 그런 제약의 범위 그다음에 담아야 될 기본적인 사항 이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재해대책법하고 재해보험법하고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재해대책법에서는 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내용에 대한 기본 안전망적인 내용을 담고 그다음에 재해보험법에서는 일종의 소득, 그보다 더 많은 소득이나 또는 선택적 안전망을 담을 수 있는 체계로 법체계가 구성이 돼서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으로 링크를 잘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차제에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이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러려면 지금 기금과 관련된 재원적인 문제가 뒤따르잖아요. 지금은 물론 재해대책법에 예비비도 쓰고 또 정책보험으로서 재보험 기금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재해가 발생하면 현장에서는 정책보험이다 보니까 다 짠돌이에요, 이미 주어져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니까. 그런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잉여 재원이 발생하면 그것은 또 정부에 반납해요. 그런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재해기금을 설치해서 재해가 발생하면 여유 있는 돈을 가지고 재해를 커버하고,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좀 비축해서 실제 농민들이 기금을 통해 가지고 보전받는다는 인식이 피부에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재원적인 뒷받침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예비비에다 담는 내용들 있잖아요. 정부의 재해보험용으로 부담하는 내용 또 재보험 기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문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것을 재해대책법에

다 넣고 재해기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운용하면 사실 오히려 농식품부가 더 적극적으로 재해대책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번에 일반법과 특별법의 범주에서 조금이라도 특별법에서 농민의 열악한 내용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그 여건을 만드는 기준은 최소한도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농민들이 투입한 내용은 그래도 보전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고 그 범주 내에서 예산적인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보전하고 또 그와 연계돼 있는 기본적인 내용 외에 보험과 관련된 영역은 또 다른 영역으로 소득 보전이나 이런 영역으로, 또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손해를 입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법에서 좀 커버하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기금 내용을 재정비하고 이런 내용이 차제에 재해대책법과 재해기금법에 담겼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오늘은 전부다 개별 조문 심사는 않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차관께서 정리를 전향적으로 해서 위원들이 구상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위원들이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다 농민들이 요구해서 피부에 느끼고 있는 내용을 담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정리를 전향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저희가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계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특별법 우선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위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특별법 우선으로 적용하게 돼 있으니까 그럴 겁니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른 법하고의 충돌도 저희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더 급한 게 지금 우리가 복구비를 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한 63% 정도가 보조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이제 100%가 못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취지가 거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수준까지도 한참 못 간 거니까 단계를 조금 더 올린다고 그러면 사실 지금 제 생각은, 제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법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 충분히 지원되도록 하자 그런 취지가 법에 들어가 주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현실적이고 실제로 농민들에게 더 갈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손실을 본 것까지 다 지원을 하자고 법에 넣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기재부가 됐든 행안부가 됐든 모든 부처가 다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하기도 힘들 거고. 그런데 이 법에다 실제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지원하도록 해 줘야 된다 그런 내용만 담아 주셔도 저희가 일하는 데는 훨씬 더 편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재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기금을 운용하다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기금이 한 7개 정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잉여 재원이 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재해가 들어오면 나가고 여기에서 독자적인 수입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일반회계에서 받아 써야 되는 그게 될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농식품부의 다른 재원을 끌어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지를 최대한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더 검토를 해서 만들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하나만 제가 첨언하면 지금 복구비를 내실 있게, 예를 들어 60~70%밖에

안 되는 것을 100%로 하자, 좋은 내용이고요. 다만 그것을 달성하려면 복구비의 기준이 되는 내용을 뭘로 볼 거냐 하는 내용을 명문화해 놓으면 최소한도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예산적으로 뒷받침할 때는 훨씬 용이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취지가 담겨 있다 하는 내용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복구비의 범위는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제가 회의진행을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회의소법하고 농안법 심사는 차기 회의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오늘 재해대책법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온라인법하고 푸드테크법은 오늘 심사를 안 하니까 시간은 좀 절약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재해대책법과 관련해서 저도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조금 질의해 보겠습니다.

차관님, 취지는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재난안전관리법하고 재해대책법하고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물론 특별법이 우선하지요.

그런데 큰 틀에서 재난안전관리법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생계 구호와 복구에 치우쳐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의 핵심은 뭐냐 하면 홍수라든가 태풍으로 인해서 주거가 파괴됐다든가 상하수도가 파괴됐다든가, 그래서 태풍·폭우로 인해 집에서 기거할 수 없다든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생계 구호와 복구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대상이. 사실 이 법의 핵심적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농작물이라는 겁니다. 대상이 좀 다릅니다. 농작물은 한 해 소득의 총액이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주거라든가 또는 주거가 파손된다든가 침수된다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는 그러면서 보관했던 식량이 사라졌다든가 이래서 생계 구호라든가 공공시설의 복구비 그런 것이 주안점이라면 저희는 대상 자체가 농작물이라는 거고, 농작물은 농민들 1년 소득의 총액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대상이 좀 다르다. 그런 것으로부터 아까 재난안전법의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건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공장이다, 공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생존과 관련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생계 구호해 주고 복구해 주면 또 가동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작물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대상이 다르다 이런 점을 하나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어업재해대책법하고 보험법하고 과연 차이가 뭐냐 이런 건데, 제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질의 또 손해보험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보면 73개의 농작물재해보험이잖아요. 그 농작물재해보험법에서 얘기하는 게 생산비를 지원하는 보험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질의해 왔고 지난 4년간 질의 답변을 받아 온 것은 생산비를 보장하는 보험법은 없다는 겁니다. 생산비가 보험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농협중앙회와 농협손해보험 측의 답변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생산비 부분이 들어갈 경우에 보험과 충돌되지 않느냐, 이중 지원 여부를 말씀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험이 설계될 때 농작물의 피해량, 소득의 양을 가지고 얘기했지 거기에 생산비

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런 것이 보험을 설계한 측의 얘기입니다.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한쪽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는 아까 생계 구호와 복구 정도 하니까 그 정도로 가는 거고 이쪽은 생산비가 빠져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공백이 있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그리고 다음 연도에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그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상의 관계에 제가 볼 때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관님.

그래서 아까 기재부의 반대나 행안부의 반대나 이런 것 때문에 법안을 성안할 때 생산비 투입 이런 것보다는 복구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 달라고 하는 정도로 성안을 하면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측면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협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저희들도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재난안전관리법하고 재해대책법하고 재해보험법상의 역할, 관계에서 농식품부도 지금 현행 체계에만 있지 말고 이걸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는 전지에 대한 시각을 놓고 차관님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 현실적 한계도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형평성 이런 얘기도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재해가 발생을 하면 제일 기본적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재해를 안 입은 농가가 가장 이득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그다음에 그것도 가입을 안 한 농가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제도를 그렇게 설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래 질서에 맞을 겁니다. 그런데 밑에 재해대책의 보장 범위나 지원 범위를 이렇게 늘려 놓게 되면 그러면 위의 제도하고 충돌이 될 수가 있다, 제가 그 취지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 당초 수확량 감소하고 그것만 따져 가지고 재해를 입어서 줄어든 것만 보장해 주는 그 상품으로 했었다가 지금은 이제 생산비 보장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채우는 쪽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생산비 보장형 보험이 없어요, 차관님. 제가 이건 지난달에도 확인한 겁니다. 지난달에도 제가 확인한 거고, 그 사이에 갑자기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한 번 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건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볼 때 딱 한 품목, 채소류 쪽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주셔서 제가 별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아까 보험설계 때, 그 말이 맞지요. 재해를 안 당한 농가들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 재해 당한 농가들에 대한 게 그다음, 그다음에 보험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되는데 그 전제는 뭐냐 하면 국가가 볼 때 이게 재해로 인정된 상황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봤을 때 재해로 인정된 사안에 대해서 해당인 거고 국가가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면 보험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해로 인정한 사안과 보험으로 가는 것이 충돌될 때가 있겠지요. 그렇잖아요? 재해로 판정됐을 때와 충돌될 때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재해의 인정 여부는 국가의 심의, 판단의 결정에 달려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까지도 설계 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그다음에 윤준병 위원님, 다른 위원님 없으면 양쪽 두 분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까지 세 분 위원님 얘기만 듣고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차관님, 재난안전대책법 있잖아요.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그때도 내용 자체는 보면 그동안에는 응급구호 그리고 복구비 이걸 중심으로 편성이 됐지만 그 조문도 제가 행안위에 있을 때 개정이 됐습니다. 평온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적극 지원한다는 것까지, 물론 그게 구체성 있게 뭘 하라는 그건 아니지만 재난안전대책법상의 기본적인 성격은 단순한 응급복구 이 정도하고는 좀…… 더 한 발짝 나아갔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어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을, 특히 농업 분야의 재해 부분들은 굉장히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게 재해를 입은 대상 농작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 자체가, 피해를 입은 시설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농민의 생계 전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게 이번에 복구해 가지고 다음 달에 바로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농업은 1년 주기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대상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약자라고도 볼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나이도 많으시고 또 기본적인 생활 자체도 그렇게 저것하지도 못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재해대책법 자체가 개별 개별 농민들한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큰돈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복숭아가 주작물로 이루어지는 정도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상기온, 그러니까 이상저온이겠지요. 서리 피해 이런 걸로 해 가지고 3분의 1 정도밖에 못 건졌어요. 그러니까 늘 100원을 벌었던 사람이라면 농사를 지어서 30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팜은 100까지가 되지 않더라도 그 농민들이 ‘내 옆에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국가라는 것이 있구나’, ‘내 손을 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재해대책비 지급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면 뭐라고 그러나 하면 ‘하늘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또 ‘올해 이렇게 안됐으니까 내년에는 잘되겠지요’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위로를 하면.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이것 정말 이분들한테 정말 조금이라도, 발생한 손해의 절반 정도라도 뭔가 지급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이번 이런 개정안 같은 분야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담아도 된다. 그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수반이 돼 가지고 이게 재정에 진짜 심대한 타격을 준다면 모르겠지만 그 개개인한테 돌아가는 금액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차관님께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 하소연이라고 들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복구비 그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겁니다. 재해 피해를 입고 복구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보조율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국가 전체 재해심의위든 가서 이 얘기를 하면 제가 듣는 소리가 이런 겁니다, 거기서는. 농업은 90%나 보조를 주는 보험이 있는데도, 그 보험에 가입을 했으면 재해가 나도 거기에서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선택해서 가입 안 한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한테 왜 이렇게까지 많이 해 줘야 되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게 아니다’, ‘본인이 원해서 재해를 일부러 입은 것도 아닌데 최대한 그래도 복구비만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도 대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재정의 문제인 것이고 이걸 어디까지 지원해 줄 거냐는 선택의 문제인데 저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애 위원**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윤준병 위원** 차관님 아까 얘기한 순위로, 재해 발생하지 않은 분이 가장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 재해보험에 가입하신 분이 그다음 차순위고 그다음에 보험 안 가입한 사람이 그다음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전제는 지금 우리 농식품부나 국가가 재해보험을 농민들의 기본 안전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기본 안전망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정책보험이기는 하지만 가입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될 영역은 별도 있다. 그리고 또 보험을 통해서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뭉뚱그려서 모든 내용은 재해보험 가입자가 정부가 책임져야 될 기본 안전망까지 책임지도록 요구하는 것, 이건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될 영역이라는 점을 환기하고 정책 설계하실 때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둬야 된다. 기본 안전망은 정부가 책임진다, 대신에 정부의 기능도 보강하면서 선택적 안전망 이건 보험을 통해서 커버한다, 이 설계를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된다 하는 점을 환기시켜 드리고요.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된 우려들을 해요. 복구의 범위에 농산물은 어디까지 집어넣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저는 복구라는 개념을 사실은 농산물 재배를 위해서 투입된 비용 보전, 생산비용 보전까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용이라고 보는데 다만 대상이 건물이냐, 아니면 실제 건물과 다른 일반 작물이냐에 따라서 개념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우기면 또 이상한 논쟁거리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아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바꿔야 되겠다고 신정훈 위원장도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 3항 7호 관련된 규정 있잖아요. 그 내용 속에다가 자기들도, 그냥 예전에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이렇게 돼 있는 내용에다가 ‘재난

발생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용 보전 및 지원' 이런 내용까지 더 넣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런 재난 기본법과 관련된 내용보다 더 나아갔어야 된다, 사실은 농업 재해대책법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후에 더 성안해서, 다음 검토할 때 그런 내용들이 함께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성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행안부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마지막으로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안을 이렇게 성안한 것은 농림부 예산의 실링 범위 내에서 하자는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농림부도 도와드리는 측면이 있고, 농어업재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농어민들의 잘못이 아니고 천재지변이잖아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또 인간이 만들어 낸 기후위기 때문에 나타난 재앙이고 하기 때문에 재정당국하고 싸워서 기금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국가 책임을 좀 강화하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법안을 낸 거지, 농림부 예산 실링 내에서 이걸 하자고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농림부 예산 외에 다른 쪽에서 더 가져와야 된다, 막말로 얘기해서 심지어는 행안부에 있는 재난관리기금에서라도 가져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농어업 재해가 더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다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금 재원을 해양환경부담금이랄지 또 농어촌상생 발전기금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를, 거기에서라도 좀 가져오자 그런 취지였던 거지 우리 농림부 실링을 건드려서 거기 범위 내에서 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니까 본 위원의 그런 취지를 감안하셔서 혹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1조 규모로 10년간 지원하는 걸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농림부가 더 큰…… 농림예산 5% 목표로 지금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하는 측면에서 재정당국하고 싸워야 된다, 거기에 저희들이 힘을 보태겠다, 그런 취지가 있으니 잘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현실적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은, 기금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안에 잡하게 되면 기재부는 충지출로 실링을 잡기 때문에 우리 기금 지출에 잡힌 게, 우리 지출로 잡혀서 어려운 건데 위원님 취지를 반영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공기금으로 두고 비워 놓고 재해가 발생하면 예비비에서 기금에다가 돈을 보내 줘야 된다, 그런 내용을 법이나 이런 데다 넣는다고 그러면 그런 건 추가로 들어오는 거니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오늘 발언은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재해대책법과 관련된 심사는 우리가 구체적인 조문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총론적인 쟁점에 대한 심사가 있었고요. 이건 또 계속해서 심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47항 및 48항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일정 49항부터 51항까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건 제정법이므로 공청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일정

을 잡아서 공청회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회의를 종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오늘 회의하면서 차관님께서 사안 사안별로 답변을 잘해 주시고 또 사안 사안별로 적극적인 고민 또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걸 집어서 혼내거나 혼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꼭 저희가 추구하는 법이 아니더라도 그 대안만 나오면 농민들한테 실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차관님께서 아까 직불제 기본계획을 검토한다든가 또는 할증과 관련된 사례를 검토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 법안소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위원장님, 1번 안건과 관련된 얘기를 아직 안 하셔서……

○**소위원장 이원택**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가 양곡관리법 심사를 해서 마지막에 재심사를 하겠다 그랬고 회의소법하고 그다음에 농안법 심사를 해야 되는데 양곡관리법은 아까 심사를 했기 때문에 다음 차수에 계속심사를 하겠고요.

○**윤준병 위원** 그 관련해서 하나만 부탁을 차관께……

○**소위원장 이원택**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봤는데 그중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시장격리, 가격안정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문제잖아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내용이 원래 입법 발의했던 취지의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 내용 차기 보고 때 전향적인 내용이 담겨서 의견 개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리고 회의소법하고 농안법은 다음 법안소위에서도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공식적으로 감사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래요. 차관님 한 말씀 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사실은 저희들도 쟁점이 많이 클리어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어저께 상임위가 끝나고서 그 법안을 오늘 회의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수석전문위원님 비롯해 가지고 입법조사관님, 행정실에서 밤을 새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많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양당 간사가 협상이 좀 늦어져 가지고……

○**정희용 위원** 차관님이 우리한테 뭐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라고.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당 간사가 부지런히 협상을 통해서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행정실하고 또 전문위원님들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농식품부도 같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박수 한번 쳐 줄까요?

(박수)

○**윤준병 위원** 너무 화기애애하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래요? 우리가 협력하면서 할 것은 하고 또……

○**박덕흠 위원** 위원장님께서 예결위원장님만 제대로 했으면 아주 1등이었는데 흠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관님도 잘하시잖아.

○**소위원장 이원택** 여기에서 위원장은 어기구 위원장님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부 관계관, 의원 보좌진 및 위원회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김선교 문금주 문대림 박덕흠 윤준병 이만희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정희용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범수

정책기획관 김정주

농촌정책국장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 양주필

식량정책관 최명철

유통소비정책관 박순연